

第252回國會
(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2月21日(月)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소위원회위원개선의견
2.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3.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4.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5.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6.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7.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8. 대한민국국기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9. 대한민국국기법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10. 地方公企業法中改正法律案
11.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12. 民防衛基本法中改正法律案
13. 地方公務員教育訓練法中改正法律案
14.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15.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
16.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
17. 以北5道에關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18.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19.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
20. 遊船및渡船事業法中改正法律案
21.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2.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3.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24.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5.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김맹곤 의원 대표발의)
26.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審査된案件

1. 소위원회위원개선의견 3
2.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 · 김학송 · 엄호성 · 박근혜 · 고흥길 · 서상기 · 정병국 · 이상득 · 전재희 · 김정훈 의원 발의)(계속) 4
3.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박재완 · 박찬숙 · 진수희 · 김석준 · 김충환 · 진영 · 심재철 · 윤건영 · 김정훈 · 이주호 · 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4

4.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영순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강기갑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4
5.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 · 박재완 · 이철우 · 황우여 · 임채정 · 유재건 · 김재홍 · 신기남 · 정장선 · 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4
6.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 · 이재오 · 윤건영 · 정종복 · 안상수 · 유승민 · 염동연 · 안택수 · 정병국 · 심재덕 · 이군현 · 이인기 · 박성범 · 유정복 · 이시중 의원 발의)(계속)	4
7.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4
8. 대한민국국기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 · 권오을 · 김광원 · 김석준 · 김성조 · 김태환 · 박종근 · 이상득 · 이인기 · 이해봉 · 임인배 · 주성영 · 주호영 의원 발의)	4
9. 대한민국국기법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홍미영 · 김원웅 · 김태년 · 김현미 · 노현송 · 박기춘 · 서재관 · 신중식 · 심재덕 · 안상수 · 염동연 · 유승희 · 유시민 · 이경숙 · 이계안 · 이원영 · 이재오 · 장복심 · 전병헌 · 정문헌 · 정성호 · 제종길 · 조성래 · 최규식 · 황우여 의원 발의)	4
10. 地方公企業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최규식 · 강창일 · 심재덕 · 조성래 · 홍미영 · 원혜영 · 양형일 · 우제항 · 유인태 · 노현송 의원 발의)	10
11.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최규식 · 강창일 · 심재덕 · 조성래 · 홍미영 · 원혜영 · 양형일 · 우제항 · 유인태 · 노현송 의원 발의)	10
12. 民防衛基本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최규식 · 강창일 · 심재덕 · 조성래 · 홍미영 · 원혜영 · 양형일 · 우제항 · 유인태 · 노현송 의원 발의)	10
13. 地方公務員教育訓練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최규식 · 강창일 · 심재덕 · 조성래 · 홍미영 · 원혜영 · 양형일 · 우제항 · 유인태 · 노현송 의원 발의)	10
14.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 · 정성호 · 강봉균 · 강성종 · 광성문 · 김명자 · 김성곤 · 김영춘 · 김원웅 · 김진표 · 김태년 · 김희선 · 문병호 · 문학진 · 박기춘 · 박세환 · 박순자 · 배기선 · 백원우 · 심재덕 · 안민석 · 염동연 · 오제세 · 우윤근 · 원혜영 · 유선호 · 이근식 · 이경재 · 이계진 · 이기우 · 이미경 · 이상락 · 이시중 · 이원영 · 이은영 · 이인기 · 이종걸 · 이철우 · 임종인 · 임채정 · 전재희 · 정세균 · 정장선 · 조정식 · 최성 · 최재성 · 한명숙 · 허천 · 황우여 의원 발의)	20
15.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이재창 · 유승민 · 진수희 · 이시중 · 이상득 · 고흥길 · 최병국 · 정장선 · 신국환 · 김재윤 · 황진하 · 안상수 · 정종복 · 이인기 · 허천 · 최용규 · 이군현 · 김재원 · 박순자 · 정몽준 · 엄호성 의원 발의)	21
16.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김병호 · 엄호성 · 권철현 · 박형준 · 서병수 · 정화원 · 정의화 · 이성권 · 정갑윤 · 안경률 · 장향숙 · 김형오 · 김양수 · 이재웅 · 박승환 · 박계동 의원 발의)	21
17. 以北5道에關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5
18.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정부 제출)	35
19.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5
20. 遊船및渡船事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91
21.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 · 김덕규 · 이상득 · 임채정 · 정성호 · 박재완 · 유승민 · 김재원 · 이해봉 · 이시중 · 서병수 · 박세환 · 엄호성 · 송영길 · 김태년 의원 발의)	91
22.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 · 김한길 · 송영길 · 임채정 · 이명규 · 박재완 · 김재원 · 유승민 · 이상득 · 이해봉 · 이시중 의원 발의)	91
23.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장향숙 · 김춘진 · 유선호 · 정성호 · 조경태 · 김희정 · 조배숙 · 김현미 · 이시중 · 황우여 · 배일도 · 이기우 · 김희선 · 김원웅 · 김덕규 · 이상락 · 정병국 · 문석호 · 박재완 · 염동연 · 신중식 · 장복심 · 이해봉 · 이재오 · 최재성 · 안민석 · 김부겸 · 강창일 · 이윤성 · 임종석 · 엄호성 · 이원영 · 이상경 · 김태년 의원 발의)	91
24.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백원우 · 이원영 · 이용희 · 임종석 · 지병문 ·	

유기홍·구논회·장향숙·박기춘·우제항 의원 발의)	91
25.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김맹곤 의원 대표발의)(김맹곤·오시덕·정병국·서병수·노영민·안민석·오제세·박재완·정성호·허태열·정문현·박상돈·박순자·이호웅·조경태·김원웅·주승용·제종길·장경수·한병도 의원 발의)	91
26.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인영·박영선·선병렬·이광철·김재윤·김태홍·노웅래·이은영·안민석·우상호·정청래·이미경·김재홍·윤원호 의원 발의)	92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용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입법조사관 전춘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희** 입법조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께서서는 잠시 동안 사정에 의해서 사·보임된 것이니까 별도로 인사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고, 고흥길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고흥길 위원입니다.

행자위로 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쁘고 또 처음 하는 상임위원회가 되어서 좀 두려움도 앞섭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자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박찬숙 위원님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님께서 금년 1월 5일자로 취임하셨는데 아마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그동안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5일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와 정부혁신을 이끌어 가는 핵심 부처로서 참여정부 출범 3년째인 금년을 경쟁력 있는 정부 실현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약하나마 저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에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주어진 시대적 소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1. 소위원회위원개선의견

(10시15분)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던 원혜영 위원님께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예산심사소위원으로 우선 배정했고, 대신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셨던 최규식 위원님을 법안심사소위원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는 우제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고흥길 위원님께서서는 예산심사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 · 김학송 · 엄호성 · 박근혜 · 고흥길 · 서상기 · 정병국 · 이상득 · 전재희 · 김정훈 의원 발의)(계속)
- 3.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박재완 · 박찬숙 · 진수희 · 김석준 · 김충환 · 진영 · 심재철 · 윤건영 · 김정훈 · 이주호 · 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4.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영순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강기갑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5.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 · 박재완 · 이철우 · 황우여 · 임채정 · 유재건 · 김재홍 · 신기남 · 정장선 · 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 6.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 · 이재오 · 윤건영 · 정종복 · 안상수 · 유승민 · 염동연 · 안택수 · 정병국 · 심재덕 · 이근현 · 이인기 · 박성범 · 유정복 · 이시종 의원 발의)(계속)
- 7.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10시17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7항,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체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만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 6개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대한민국국기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 · 권오을 · 김광원 · 김석준 · 김성조 · 김태환 · 박종근 · 이상득 · 이인기 · 이해봉 · 임인배 · 주성영 · 주호영 의원 발의)
- 9. 대한민국국기법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홍

미영 · 김원웅 · 김태년 · 김현미 · 노현송 · 박기춘 · 서재관 · 신중식 · 심재덕 · 안상수 · 염동연 · 유승희 · 유시민 · 이경숙 · 이계안 · 이원영 · 이재오 · 장복심 · 전병헌 · 정문헌 · 정성호 · 제종길 · 조성래 · 최규식 · 황우여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대한민국국기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배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기는 한 나라를 상징하고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것발로서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대다수의 나라들은 국기에 대해서 헌법 또는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는 달리 헌법이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국기에 대한 국내외적 존엄의 표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 · 계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유지를 통하여 애국정신의 고양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둘째, 국가는 국기의 제작 · 보존 · 사용 및 판매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국경일, 1월 1일, 국군의 날, 한글날, 현충일, 정부가 따로 정하는 날 등을 국기를 계양하는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 학교에는 연중 국기를 계양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현충일 · 국장 기간 · 국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계양하도록 하고 국기와 다른 기(외국기 및 국제연합기)를 계양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기 관련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국기 또는 국기문양은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기에 대한 존엄의 표현이 미흡한 점을 감안, 동법의 제정으로 국기에 대한 존엄성 제고와 애국심 함양 의지를 적극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동법의 제정 취지를 적극 지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로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심의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상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홍미영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상배 의원님께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하셨지만 본 의원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대한민국국기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의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국권·국위·존엄성을 대표하는 대표적 상징이며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식적 표상이므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는 한편, 국가와 민족의 최고 이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독립 자주 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기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있고 국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국기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또는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관습상의 국기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나아가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존엄성의 수호 및 애국정신 고양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안으로서 현재 대통령령인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하되 국기의 게양시각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홍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한민국국기법안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이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안은 2004년 6월 10일자로 제안되어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안은 2004년 9월 24일자로 제안되어 동년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과 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모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법률로 승격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의 존엄성 수호 및 애국정신의 고양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안을 제1안으로, 홍미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제2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률안 구성 개요를 보면 제1안은 총 4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정법안으로서 현행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

항 대부분을 수용하고 국기의 유지·관리 의무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2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정 법안으로서 현행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수용하되 국기의 게양시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기는 그 국가의 이상 또는 목표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상징으로서 그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동화적 통합 및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독립성 및 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기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국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기에 관한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국기에 관한 법적 규정은 1949년 10월 발표된 국기제작법이 최초로 그 후 1966년에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으로 그 게양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1984년에는 기존의 국기제작법과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을 통합하여 대통령령인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기의 법제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기는 한 나라를 상징하고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만큼 나라에 따라서는 국기에 관한 내용을 헌법으로 규정하거나 관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기에 관한 사항을 헌법으로 규정할 사항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상징물인 국기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관습헌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헌법으로 규정할 만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에서 국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있고 북한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이 있으며, 기타 규정이나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콜롬비아 캐나다 영국 등이 있습니다.

법안의 구성체계에 관한 사항을 보면, 국기의 명

칭이나 존엄성 유지 및 국민·국가의 책무 등의 선언적 사항과 국기의 구성,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 게양방법 등 통일성의 유지가 필요한 사항 및 국기의 관리, 국기의 활용 및 그 제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 밖의 국기 작도법이나 깃봉·깃대의 제작 및 설치 방법,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국기에 대한 맹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는 국민의례 시 낭송되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법률로 규정할지의 여부를 1안과 2안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 게양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용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金洪春 委員 김기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배 의원과 홍미영 의원께서 때에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국기의 법률상 위치를 격상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낸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도 두 분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번에 현재의 수도에 관한 판결문에서 애국가와 국기 같은 것은 관습헌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비록 법률이나 헌법에 없더라도 헌법 개정의 절차에 준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로 하는 데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법률로 하게 되면 혹시 오히려 관습헌법의 위치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즉 국회에서 법률만 고친다면 다수당이 얼마든지 국기를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국민투표라든지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헌법재판

소의 견해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헌법에 올리지 못하고 법률로 고쳐 가지고 오히려 헌법 사항을 법률 사항으로 격하시키는 결과가 되면 어쩌나 하는 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제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기를 훼손하고 오손하는 데 대해서는 형법에 국기에 관한 죄가 있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을 만든다면 국기에 대한 오손 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때는 경찰력 또는 국가 공권력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 대한 검토가 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해서 범죄가 자행되는 것을 보면 경찰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법을 만든다면 국기의 오손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규정을 확실히 해 둬으로써 적어도 국기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검토가 제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이상배 의원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배 의원** 지금 세계 각국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기를 규정하는 나라가 70여 개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기에 대해서 대접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최소한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국기에 대해서는 존엄성과 동시에 국민들과의 친근성 두 가지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국기에 대한 예우와 동시에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훼손·오손과 친근성 이 두 가지는 잘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래 위원님!

○**조성래 위원** 조성래 위원이올시다.

장관님께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국기나 국가는 한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 사항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기에 관해서 법에서는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국기의 보존이라든가 설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대통령에게 위임해서 대통령령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차피 헌재에서도 관습헌법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도 이것은 관습헌법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지금 그대로 두고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국기의 보존 등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국기의 훼손이나 오손에 관한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헌법사항으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에 헌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별로 큰 논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조금 더 시기를 늦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기에 관한 법을, 그러니까 보존이나 관리나 게양 방법이나 국기를 존중하는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을 고려하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기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하는 규정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다음 기회에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떨지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사실 국기에 관한 규정을 헌법상에서 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 의 예와 우리나라의 법 정신에 비추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그에 따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최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규식 위원** 최규식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상배 의원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월 1일 국기 게양을 명시하자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상 설이라고 해서 구정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에서 1월 1일에 우리처럼 신정의 뜻을 떠나서 새해의 시작—첫날—이라고 해서 국기 게양을 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기에 대한 맹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일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잔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할 것

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도 어느 의미에서는 형식으로 흐르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홍미영 의원님께 여쭙는 것은 학교에서 매일 게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매일 게양한다는 것은 매일 걸고 내린다는 것인데 지금 현실로 봐서 가능한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은 헌법 사항이어야 하지 않느냐, 법에다 하는 것이 국기에 대한 것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앞서 두 분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 어차피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상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배 의원** 존경하는 최규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1월 1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문제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 특별히 여러 위원님들과 다른 의견 제시는 없고요, 그동안 학교와 군부대의 경우에 낮에만 게양한다는 일반적인 것을 매일 게양이라고 강조점을 둔 것은 큰 강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늘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학교 현황이 대체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깃발을 날리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아이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게양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도 소위에서 보시면서 학교 현황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김충환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이재창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강창일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김충환 위원** 먼저 이와 같이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신 두 분 의원님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기법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식 때마다 국민의례해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또 애국가 제창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조금 확장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기 및 국민의례에 관한 법’ 해서 조금 확장할 필요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일반화되어 있는 의식을 반영하고 지금 국가에 대한 문제도 애국가 저작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

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도 규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법이 포괄적이면서 좋은 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법제화되는 것은 좋지만 태극기를 너무 신성화해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문양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게 되면 사실 그런 점은…… 홍미영 의원님 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구멍을 뚫으면 안 된다, 원형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기에 대한 이미지, 빨강색 파랑색 또는 그 꺾이런 것들이 보다 다양하게 활용되어 가지고 국민 모두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제한보다는 중요한 것만 정하고 우리 생활에 친숙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법 내용이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함으로 해서 경직화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또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또는 국기에 관한 규칙을 정해서 행자부나 정부에서 하면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장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말씀 듣고서 답변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우선 이상배 의원님 또 홍미영 의원님, 법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시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격상시켜서 제정한다는 의미는 일단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헌법에 규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논의해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뜻에서 법안으로 제정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아까 이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존엄성과 국민과의 친숙감을 조화시킨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안에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물품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었는데 이 법이 순수하게 선언적인 뜻이라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강제하는 규정을 담은 법이라면 너무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고 또 국기의 존엄성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활용한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좀더 내용을 구체화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강창일 위원님!

○강창일 위원 강창일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국기법과 국가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군국주의의 부활, 국가주의의 부활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애국주의에 호소해 가지고 일본이 군국주의로 재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선 외국의 사례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헌법에, 법률에, 영에 여러 가지 있으니 어느 것의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두 번째, 존엄성과 친근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52년 동안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친근성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통령령으로 했어도 존엄성과 친근성을 가지고 있었고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뭔가 미비된 것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설명되었을 때 영을 바꾸어서 법률로 옮긴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존엄성이 덜하고 헌법이나 법률로 하면 존엄성이 더 있게 된다 이것은 말이 될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조금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대통령령 때문에 국기에 대한 존엄성 이런 데 미비된 것이라든지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재창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강제적으로 강화해 가지고 반발을 초래한다거나 오히려 존엄성이라든지 친근성이 훼손될 위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세 분 질의에 대해 일괄해서 요점만 답변하시지요.

○이상배 의원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 국기의 존엄성을 살려 가면서 국민들과의 친근성도 유지하면서 국기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자 이런 뜻에서는 입장이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만 뜻을 같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 저도 포함된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행령보다는 단일 법률이 격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국기에 대한 예우를 형식적으로 훨씬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습헌법에 비추어 볼 때는 단일 법률이 지위가 낮다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명문헌법이 아닌 관습헌법이 단일 법률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단일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냥 시행령에 두고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점들만 법률로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령에서 국기에 관한 의식과 이런 세부조항들을 다 다루어서 시행령이어서 불편하다는 점들은 없습니다. 또 시행령 중에서 일부분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올렸기 때문에 단일 법률로 올라간 부분이 반발심을 준다 이런 내용도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항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중요한 부분들은 법률적 지위를 갖는 것이 우리나라 국기의 위상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형식적인 부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간에 시행령으로 일부 들어간 것이 60년대 70년대 군데군데 들어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종 모아진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단일 법률로 올릴 부분은 올리고 했는데 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부분만 시행령에 그냥 남겨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어떤 공식행사에서는 맹세문이 나가기도 하고 일반 행사에서는 맹세문이 안 나가기도 하는데 제가 두 가지 다 행해 봤는데 의미 부여가 다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구구절절이 하지 않았을 때 자기 가슴에 스스로 담는 내용들이 상황에 따라서 더 진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굳이 법률안에 올리지 않아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양형일 위원님!

○양형일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저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법안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님과 조성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미 국가의 상징물로서 태극기는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상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관습헌법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김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령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극기로 한다 이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법안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극기로 그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정해서 현행 기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 사항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역사성 정체성으로도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령으로서 관리나 게양, 의식, 보존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행 법령의 규정으로서도 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답변하실 것 없으시지요?

○이상배 의원 이인기 위원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예, 이인기 위원!

○이인기 위원 이 국기법안에 관해서는 제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답변을 해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안 의원님들도 상임위원회 업무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진행을 종료하시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 그런 말씀이지요?

○이인기 위원 예.

○위원장 이용희 이상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이상배 의원 소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습헌법적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관습헌법적 사항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두는 것은 괜찮고 법률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기 국가 또 국어도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국어기본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로 한다’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자체도 헌법적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법률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상배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 地方公企業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식·강창일·심재덕·조성래·홍미영·원혜영·양형일·우제항·유인태·노현송 의원 발의)

11.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식·강창일·심재덕·조성래·홍미영·원혜영·양형일·우제항·유인태·노현송 의원 발의)

12. 民防衛基本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식·강창일·심재덕·조성래·홍미영·원혜영·양형일·우제항·유인태·노현송 의원 발의)

13. 地方公務員教育訓練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식·강창일·심재덕·조성래·홍미영·원혜영·양형일·우제항·유인태·노현송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기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의원** 먼저 지방이양 관련 4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들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분권을 촉진함은 물론이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효율적 업무분담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지방공사에 대한 사채발행 승인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사가 사채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각각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개정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기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일정 사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사전승인·협의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설치·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전협의권과 시·군·구의 행정기

구 설치 시 시·도지사의 승인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현재 민방위대 동원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국가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지적인 자연재해가 해마다 늘어 가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외에 자치단체장도 지역 민방위대 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 수립·통보, 국외훈련계획의 수립·시행의 폐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보고의무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공기업법 등 4개 법률안은 이미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결정된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의 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박기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들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2004년 11월 26일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동년 11

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6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의 사채 발행에 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지방공사에 대한 사채발행 승인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여 사채 발행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지방분권화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2003년도 12월 말 현재 지방공사는 7635억원의 적자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 비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입니다. 의료원의 경우는 82%, 지하철공사의 경우는 102%인바, 개정안과 같이 사채발행의 승인권을 이양하는 경우 과도한 사채발행으로 인하여 공사의 경영수지가 보다 악화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이 대통령령에서 승인권을 이양하는 기준을 정할 때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시·도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경우 시·군 및 자치구 소속의 공사의 경영 악화는 시·도의 재정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시·도의 승인권을 폐지할 경우 시·도의 적절한 통제 수단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도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설치·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폐지하며 셋째, 시·군·구의 행정기구 설치 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분권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전체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하고,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며,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 나아가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쳐 교부세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사태 시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권한은 비상동원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 소방방재청장에게만 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동원명령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지역 민방위대 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여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해 오던 민방위대 동원 업무를 개정안에서는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장도 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지역에 한정된 국지적인 지역 재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를 소방방재청장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응급조치 등의 경우는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동원명령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게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대 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 관련 조문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을 수립·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당해 일반지침에 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던 것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실정에 적합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던 것을 폐지하며 셋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조치 결과 보고 의무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중앙의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의 수립·통보 권한과 국외 훈련 계획 수립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교육훈련 운영에서 탈피하여 지방 분권 시대에 맞게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심의 시에도 제기되었듯이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인 지침을 폐지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구하거나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 교육훈련의 남발로 인한 조직 팽창 및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의 각종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려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11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 훈련 계획의 수립·시행권은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이용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유기준 위원입니다.

박기춘 의원님께서 네 가지 법안을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박기춘 의원 법률안을 보면 대통령령이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법안이 개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 결과적으로 부채비율 80% 미만 그리고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지방공기업이 100억 원 미만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지사의 사후 인준 절차도 폐지되고 아마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재정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2003년도 말에 지방정부 부채가 18조 원이고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21조에 이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많아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에 있고, 또 2003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정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국가 부채가 167조 원,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끝나는 2008년도에는 237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방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의 채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이지 이렇게 재량을 더 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는 점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대통령령하고 같이 해석을 해 보면 우량 공기업이 이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량 공기업은 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 경영을 잘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국민한테 부담을 지우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이런 식으로 지방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인수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인수도 결국 보면 지방의 은행이라든지 지방의 상호신용금고 같은 제2 금융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방공기업이 잘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또다시 지방의 은행이라든지 제2 금융권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국민 전체의 부담을 늘릴 수 있고 또 지방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또 필요성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량 지방공기업이 뒷하러 이렇게 기채를 해서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등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과연 이게 필요한 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박기춘 의원님이나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유기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행자부 쪽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춘 의원** 지금 유기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장관의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앙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 정책에 발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율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사채발행승인권의 이양이 지방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사의 부채비율이 높거나 또 염려하신 대로 경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역시 대통령령으로 사채 발행 기준

을 마련해서 현재와 같이 장관 승인을 받도록 보완되어 있는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좀 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행자부장관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방향은 지방공기업을 비롯해서 국가투자기관이나 기업들은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경영을 하고 그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체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방공기업이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또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법안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생각하고 있는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에 기준을 정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일정 수준 이상,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채비율이 80%를 넘지 않는다는지 이런 식의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또 규모가 어떠한냐 하는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시스템이 계속 강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지방 이양도 하고 지방자치를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능력이 확충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경영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치능력을 확충시켜 주는 쪽에서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스스로 경영을 하고 그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제도적인 것을 보완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완·통제 시스템을 스스로 갖추는 것도 저희가 강구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고, 그 평가 결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원하고 보완해 주고, 또 잘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데는 보완하는 평가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평가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경영을 선진경영 시스템으로 가게 해 주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하는 기업은 더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에서 보완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서병수 위원님!

○**서병수 위원** 저도 유기준 위원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이 법안 자체가 원래 작년도 11월 2일에 행정자치부가 지방일괄이양법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의 요구대로 분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장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한 같은 것들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가지고 장관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또 책임성 이런 것들도 같이해서 제대로 지방 분권을 시행하자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모든 규정들이 정해져 있고 또 앞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제출된 이 법안의 내용만 봐 가지고는 오히려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듯한, 오히려 과거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법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행법에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지방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소규모에 대한 것은 일체 이야기가 없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어떤 모양새로 갖추어질 것

인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내용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역으로 해석해 드리면,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체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 그러면 이 법안의 내용은 ‘100억 이하의 금액을 발행해 가지고 80%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시키면 행정자치부장관하고는 시·도지사가 관계없이 승인을 해 준다’ 명확하게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서병수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은 언제 시행안이 완전히 마련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희들이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나와 있는 대로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준비가 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 묻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서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제68조에 원칙을 정하는 문제인데 아무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규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강의 기준만을 정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채비율 80% 미만, 3년 연속 당기순이익 발생, 발행금액 100억 원 미만’ 이것은 지금 행자부가 생각하고 있는 내적 기준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대통령령에 정하는 그 기준에다가 명시를 해 줘야 이게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대강과 원칙,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채비율이 80%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정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경직적이기 때문에 자율성에 저해될 것 같고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80%가 아니라 10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이나 또는 경영에 있어서의 충실성 면에서, 건전성 면에서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재창 위원** 최소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소위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자율성을 주는 원칙이지만 사채 발행에 대한 재정 건전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이재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성격이 여기의 이 조문에 어떤 것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제시해서 소위원회에 내도록 해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아무 내용도 없이 대통령령에 의하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행자부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기준, 만약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사채 발행을 하는 지방공사는 재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실하기 때문에 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공사가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2003년 말 현재 지방공사 101개 중 부채비율 80% 미만을 만족시키는 곳은 5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용희 위원장, 이인기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에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공사가 방만한 운영, 경영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지방공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기업법 개정할 때 적어도 민간기업에서 CEO에게 부과하는 책임 정도는 부과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부실하게 운영할 때는 CEO에게, 또 감독을 맡은 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 이런 규정을 두어서 방만한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안전장치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기준을 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에 외국에 내보내서 훈련시키는 것을 일괄해서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규정에 대해서, 원칙은 지방분권적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단체가 아직 그런 점에서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전부 위임을 할 경우에 이것이 실효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다소 선심성 해외훈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위임할 때에 이것도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줘서 위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는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쩌냐 하는…… 그런 게 없다면 이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행자부가 하나의 통계를 잡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방만하게 해외훈련을 시키는 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 대한 제재규정도 같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기**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강의 원칙을 정하는 것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을 경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적겠다 하는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자율성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문제와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들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룬이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하는 기능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운영해 보면서 현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건전한 지방공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면 이 기준들도 대통령령이니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CEO한테 책임성을 주는 문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국가투자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의 CEO에 대해서 하는데 민간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나 경영 효율성이 뒤떨어

지는 요인 중 하나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마는 정부에서 많은 간섭과 규제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앞으로 그런 것에 자율성을 주되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리까지도 묻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은 법에 어디든지 반영하는 것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훈련에 내보내는 것이 선심성으로 바뀌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되고 그래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주면 지금 국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구요.

또 저희들이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2007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전 지자체가 총액인건비제로 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하에 국외훈련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다른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이나 사람의 운영에 있어서 적절성을 확보하게 지도를 해 주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창 위원** 보고의무에 대한 것은 시정조치를……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보고의무는 사실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감독 권한에 의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시정조치권을……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시정조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시정조치에 대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도감독에 의해서 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기**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강창일 위원**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말이지요, 간단한 명칭의 변경인 줄만 알았습니다. 읍·면·동의 명칭 변경을 도 단위에 넘긴다 이렇게 간단히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분합·폐치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하고요, 또 하나는 행정구조 개칭—개편—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미리 알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통합은 포함이 안 되고 명칭 변경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단지 명칭 변경만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강창일 위원** 그런데 여기 폐치·분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역 변경이라든지 폐치·분합도 포함되어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의원** 폐치·분합은 안 되어 있고요, 명칭 변경하고 사무소 설치 변경 두 개만 되어 있는 것이고……

○**강창일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문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보았는데 뜻을 몰라서 여쭙어 보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상했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 의원** 명칭 변경하고 사무소 변경이고요, 지방의회 쪽에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여과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현재와 같이 분합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기** 다음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역시 큰 지방분권의 원칙하에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이 개정안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는 교육훈련에 대한 기준과 재량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좋겠

습니다. 교육훈련 자체에 대해서 워낙 모든 지방 정부, 중앙정부도 똑같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방정부가 거의 최소한도 규정상 이행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훈련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합니다. 이 개정법률안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무장관 입장에서 내용은 자율과 특성을 살리도록 하되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풋(input)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할 때 소위 1%론, 기계도 기름을 쳐야 돌아가는데 사람을 교육시키지 않고 쓰느냐, 인건비의 1%를 쓰자 해서 600~700억 되는 것의 6~7억 정도를 썼습니다마는 제가 시장으로 부임했을 때의 당시 교육비의 총액이 1억 원 남짓했습니다. 중앙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고 그나마 도에서 시키는데 꼭 필요한 교육 내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외에 어떠한 배려도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원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는 지금 법 규정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시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 혁신이나 다방면의 교육에 대해서는 자치인력개발원의 수요를 확충해서 거기서 지금 대대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도입되고 있는 이러닝(e-learning)시스템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교육을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방향에서의 대

책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기** 다음 김충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 위주의 상황이나, 아니면 자율성을 주기 위한 상황이나는 그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4항에다가 말하자면 ‘전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그런 내용의 선언적인 규정이라도 있어야 이것이 자율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기춘 의원님이 아주 좋은 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보면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여기서 “폐치·분합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구역변경”은 “명칭과 구역변경”으로 바꾸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명칭이라든지 구역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꼭 필요해서 명칭 변경도 하고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이것을 장관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중앙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 말하자면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이나 광역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바쁘고 또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끌고 또 안 되게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여기에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해당 자치단체가 명칭이나 구역 변경에 대한 조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결정이 나면 중앙정부 또는 광

역 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도로 해서 서류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위에 담당 공무원이 앉아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시간을 계속 끄는 것이 과연 자치정신에 맞느냐, 사회적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박기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기본원칙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입법사항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을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서 아까 이재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더 주는 방향에서의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또 그것이 정부의 뜻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치기능이 확립되면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각 부처도 알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자치능력이 얼마만큼 확충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금년이 민선자치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지금 민선자치 10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평가해 보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방향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충환 위원** 간단하게 보충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가 보면 행정구역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경우에도 10년이 되어도 위에서 안 해 주니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인기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제로 서울의 구청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고, 거기 시장이나 구청장도 다 행정고시 출신의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구의원들도 그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표들인데 시나 행정자치부에 있는 공무원이 앉아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불합리한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결정사항으로 넘겨주고 만약 선거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 때문에 늦출 필요가 있다면 보고를 받은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시행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정은 이미 자치단체에 맡겨 두고, 시행시기를 1년 또는 2년 정도 조정하는 것이지 이 권한 자체를 승인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의사를 몇몇이 앉아서 못 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을 없애는 이유가 읍·면·동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먼저 푸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은 가급적 다 푸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 법의 조항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여하튼 정부에서 반대하지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 심재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재덕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충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장관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중앙 부서에만 인재가 모여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행자부다 그다음에는 도다 그다음에는 시·군 등 해서 내려갈수록 인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가장 우수한 인재는 중앙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내려가면 갈수록 정말 그 일을 담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근래에 공무원을 지망하는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에 많이 몰려 있고 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벌써 지방자치 10년 아닙니까?

저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이런 때 다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를 한 단계를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박기춘 의원이 제안한 대부분의 안이 그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해서, 지난번에 어느 지역에 국정감사를 나갔더니 책임자 얘기가

너무 답답했어요.

“지방자치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래서 교부세를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밤잠을 설치고 눈에 핏발이 설 정도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해서 주관하시는 행자부에서 그야말로 각 지역의 경쟁을 채찍질하는 쪽으로 방향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이재창 위원님 선거구에서 민원인들이 여러분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깐, 어차피 이 법안은 소위원회로 넘겨야 될 것이니까 간단간단히 해서 오전 중에 제안설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이인기 위원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를 뒷받침한다는 뜻에서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습니까 마는 자치단체에서 자기 책임하에 공사 등을 잘 운영해 나가겠느냐, 방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CEO 내지 경영의 마인드, 경영의 방법, 경영의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자치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3년 12월 말 현재 공사가 7630억 원의 적자 상황을 보이고 있고 부채비율도 80% 75% 10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의 장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누가 자치단체장이 될지도 모르고 또 물러난 분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의무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한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채 발행에 대한 승인권을 이양하는 경우 사전에 여러 가지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자기가 결정해서 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국민과 주민들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다 안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는 물론, 통제수단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 권오을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을 위원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 박기춘 의원과 장관께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인기 위원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같이 위임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고 부채율도 높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관련된 공사는 부채가 8조에서 보통 3조, 2조 정도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전 광주에 왜 지하철을 하는지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결정에 의해서 사채를 발행하면 1000억, 2000억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권한을 위임하는 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위임하는 기준에 있어서 분명히 권한과 책임이 같이 위임되도록, 그리고 부채비율이든 공기업의 적자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안하신 박기춘 의원께서나 행자부장관께서 분명한 차별화된 기준을 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의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어차피 법안들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니까 소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하여튼 말씀하신 뜻에 충분히 동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14.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정성호·강봉균·강성종·곽성문·김명자·김성곤·김영춘·김원웅·김진표·김태년·김희선·문병호·문학진·박기춘·박세환·박순자·배기선·백원우·심재덕·안민석·염동연·오제세·우윤근·원혜영·유선호·

이근식·이경재·이계진·이기우·이미경·이상락·이시중·이원영·이은영·이인기·이종걸·이철우·임종인·임채정·전재희·정세균·정장선·조정식·최성·최재성·한명숙·허천·황우여 의원 발의)

15.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이재창·유승민·진수희·이시중·이상득·고홍길·최병국·정장선·신국환·김재윤·황진하·안상수·정종복·이인기·허천·최용규·이군현·김재원·박순자·정몽준·엄호성 의원 발의)

16.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김병호·엄호성·권철현·박형준·서병수·정화원·정의화·이성권·정갑윤·안경률·장향숙·김형오·김양수·이재웅·박승환·박계동 의원 발의)

(11시51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5항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6항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 이 세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문희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6·25 이후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를 위하여 전략적 핵심 요충지인 동두천을 비롯하여 파주, 의정부, 춘천 등 한수이북 주요 도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대명제하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헐값에 징발당하는 아픔과 설움을 겪으면서 지금껏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한수이남 평택 권역으로 이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지역에서는 실업 발생과 지역경제 공동화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8월 미2사단 1만 3000명 중 2여단 병력 3600명이 이라크전쟁으로 차출되면서 동두천 경제는 파탄 직전에 있고 미군부대 종사자는 실직 상태에 이르는 등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한 공여지역은 부산 군산 칠곡 등 전국적으로 36개 지역이며 이들 지역들도 한수이북 여타 지역과 비교할 때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의 제약 등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별법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의 적용 대상지역은 동두천을 비롯하여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지 및 훈련장이 소재한 전국 36개 지역이기 때문에 명칭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여구역발전위원회를 두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수립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하여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종합계획에 포함된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해서는 징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사업시행자에 대한 우선매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종합계획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을 토지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양여, 사용 허가 또는 매입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서는 국가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지원도시 구역 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 교육문화 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승인 등 18개 개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 처리토록 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용자 및 차관계획,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동안 희생한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설움을 달래고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통하여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과 성숙한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정성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창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 이재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 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과 미2사단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이전 및 재배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동두천, 파주, 의정부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역은 앞으로 지역 공동화가 더욱 심화되고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신규로 공여되는 평택지역에 대한 발전과 피해 주민의 지원

대책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정작 지난 50여 년 동안 피해를 입어 온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한미군 이전 및 재배치 계획에 따라 피해를 받게 될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정부 지원의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환공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반환공여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을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지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반환공여지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사업, 지역주민의 고용안정사업, 교육·문화·관광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등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및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총 22개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토록 하고,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 개발사업자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지촌 주민이라는 불명예를 무릅쓴 채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온 이들 지역을 국가가 또다시 저버리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실업과 지역경제 공동화, 지역사회 붕괴 등으로 가히 폭발 직전에 있는 주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동 법안은 반드시 연내에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의 부담과 피해를 감내해 온 공여지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차원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진갑 출신 김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 법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반환공여지역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할수록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반환공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주둔지역만의 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주둔했던 반환미군기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국유재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지역 내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한미군 재배치사업과 관련해서 주한미군기지이전예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마련했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이전예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대거 이전하는 평택시 지원에 대해서만 명기하고 있을 뿐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 소재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이전에 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한미군기지이전예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김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는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16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이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 김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이전예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은 2004년 11월 23일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입니다. 이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은 2004년 11월 24일 제출되었고 동년 11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입니다. 김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이전예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은 2004년 12월 2일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이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 김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일 유사한 사안으로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취지 및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오랜 기간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감수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와 이전 계획의 확정에 따른 대규모 주한미군기지 철수지역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공여되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구역들은 지역발전이 정체됨은 물론 그 주변지역이 슬럼화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개정협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기지의 축소 및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위하여 평택지역에 52만 명 평을 확보하여 2008년까지 이전하는 사업, 둘째 산재된 주한미군부대를 통합하기 위하여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의 개정을 통하여 신규부지 87만 평을 공여하고 8개 기지 대체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셋째, 미2사단 재배치사업으로서 1단계로 한강이북 군소기지를 동두천·의정부지역으로 통합하며, 2단계로 미2사단 주력부대를 한강이남(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 223만 평을 확보·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철수지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자영업 도산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공동화를 초래하고 지역 공동체 붕괴를 가져와 지역주민의 생활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시설 설치로 인한 국가 안보상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려 온 반면, 미군시설 설치지역은 소음 등의 환경 피해, 도시개발의 제한 등

기지 확장에 따른 부담과 피해 등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부담을 감수해 왔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기지 이전에 따라 이들 지역은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이 예견되고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 또한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배려와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8일 국방위원회 소관입니다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취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설치 지역이 감수해야 하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이전해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방교부세 지원에 대한 특례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대상지역의 범위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희상 의원안에서는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을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이들 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발계획과 이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특례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창 의원안에서는 반환공여지, 쉽게 말씀드리면 철수지역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각종 특례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병호 의원안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동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인 반환공여지역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 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지역인 공여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과 이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특례와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병호 의원안에 있어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군대의 기지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규정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해 갈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3건의 법률안은 지역개발 및 지원대상지역을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창 의원안은 반환공여지(철수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병호 의원안은 반환공여구역(철수지역)과 주한미군기지가이전으로 인한 공여지역(평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희상 의원안은 가장 광범위하게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그리고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택지역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해 갈 지역의 신규 공여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로 지역공동화가 우려되는 반환공여구역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개발 제한 등 각종 부담을 안고 있는 기존의 공여구역과 동일한 영향권에 있다 할 수 있는 주변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지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희상 의원안 제4조~제6조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두고,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의원 대표발의안과 김병호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동 위원회의 설치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지원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관계 부처의 참여와 사전 협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동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르면 가급

적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신설은 가능한 억제하고 있으며, 문희상 의원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의 참여와 사전 협의는 이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새로운 위원회의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개발 계획의 수립 및 확정입니다.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은 중앙의 여러 관계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승인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갖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승인권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개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산업 진흥,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사항을 포함하여 낙후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시지역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법상의 유사한 지역 개발 계획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및 사업 시행의 승인·취소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여타 여러 가지 특례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적용 시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원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고, 김병호 의원안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재창 의원안에서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호 의원안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공여지역 개발사업 및 당해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될 예정 시점인 2014년 말까지 한

시적으로 운용될 필요에 따른 것이고, 문희상 의원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사업 및 당해 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완료 예정 시점보다 조금 더 긴 유효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창 의원안은 특별한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에 의한 반환공여지역 개발사업 및 당해 지역 지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여지역 및 그 주변지역과 반환공여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및 당해지역의 지원은 미군기지가 있는 한 계속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고 특정 기한 내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 개발사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예산 소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원안의 경우 소요 예산액은 향후 10년간 총 2조 420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재창 의원안은 27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김병호 의원안은 2015년까지 8조 57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원안의 경우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의 추진에 대해서 연간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이재창 의원안의 경우에는 환경기초조사와 관련하여 총 3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여구역 등의 지상물, 지하시설물, 위험물, 토양오염의 제거 등과 관련하여 문희상 의원안은 4억에서 2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이재창 의원안은 86억 원을 추정하고 있는 등 그 산출 내역과 근거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요 예산에 대하여 정부 측 입장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며, 3건의 제정안들은 제정 법안이기에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공청회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용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영순 위원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위원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50년 이상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무총리나 정부 측에서는 상당히 막대한 이전비용을 무상 양여할 수가 없다,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의견을 계속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지금 그 목적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한반도 방어, 즉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주둔해 있던 주한미군이 지금은 동북아지역 내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주둔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지역 내의 그런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차츰차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이 재배치되고 그 공여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한미군의 이런 목적, 성격이 바뀌었다면 저는 당연히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목적이 바뀐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 막대한 이전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되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전비용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입장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좀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치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이전에 대해서는 뭔가 명쾌하지 않고 상당히 쉬쉬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주둔비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말 50년 이상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이나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앞으로 주한미군이 재배치되고 그에 따른 공여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법에는 상당 부분 그런 지원책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이 이 법에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한 특례가 지금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라 개발제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법에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군에 의해서 토양오염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에 의한 환경오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에 대한 해소책이 충분히 협상되지도 않고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짊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하고 몇 가지 법안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단은 우리 정부의 부담이 아닌 미군의 필요에 의한 재배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제대로 협상을 해 주셔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법안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규식 위원님!

○최규식 위원 최규식 위원입니다.

요는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를 무상 양여를 할 거냐 유상 매각할 거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역시 따져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건 별론으로 하고, 우선 행사 부장관께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상 양여는 안 된다는 식으로 입장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상 양여가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유상 매각을 하겠다는 것을 정한 것인지 또는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좀더 논의가 진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 입장을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장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준비까지는……

○최규식 위원 그러면 계속 얘기가 헛돌 수밖에 없어요.

○이영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분명치 않기 때문에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는가가 분명치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조성래 위원 위원장님,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희 말씀해 보시지요.

○조성래 위원 조성래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나 특별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부산만 두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9월엔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금년 1월인가 2월인가에 총리께서 부산에 오셔서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고, 지난번 김병호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부의 방침이 지금 어떻게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관심 있게 들여 봐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추측하는 바로는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준비 중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점에 관해서 물론 지금 당장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시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정부가 준비 중인 어떤 대안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사실 미군이 사용했던 땅에 대한 반환 문제는 국방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주관 부처로 되어 있고, 사실 정부 내에서 제가 온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고, 제가 정부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렇게 하시지요.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저도 이에 관련되는 문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양부의 입장은 이런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여구역을 어느 범위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되는 조건을 바탕으로 공여지역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 철수지역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이전되는 지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양지역을 둘러싼 위요지역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나중에 정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그다음에 일단 지정된 공여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법이—모법이—국유재산법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의 경우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 제44조제1항제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 의원의 어떤 공여지 기준 범위에 따라서 한 2700억부터 많게는 15조까지로 그 금액이 상당한 범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대도시를 가 보더라도, 미국 같으면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가 보면 중간에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을 설계하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데, 서울·부산·대구·의정부 이런 지역들이 다 해당되고 이 지역들은 다 대도시 또는 그 주변의 위성도시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

부에서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재원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소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도 정부가 이런 땅을 다시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다만 이 재원 조달의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만큼 국민한테 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 법을 잘 조화롭게 해석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문제는 미군이 사용했던 미군기지 지역을 보면 단순히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물 같은 무기고라든지 석유저장고·주유소·공작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오랜 기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토지 오염의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용산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상회복 비용이 100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본래 토지의 가치 이외에 원상회복 비용도 문제되니 만큼 만일에 이것을 지자체에 유상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물책임도 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지고 정부에서 과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마련하는 경우에는 이런 단순한 토지 비용뿐만 아니라 이런 지상물 등 위험물 제거 비용과 토지 원상회복 비용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국유재산법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전반적인 정부의 상황과, 현 상태가 어느 정도의 비용과 또 그것을 유상공여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부담이나 지금 지적하신 그런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정부 내 의견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또 주관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장관께서 아까부터 자꾸 알맹이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아주 상세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기본방향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는 길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흥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고흥길 위원!

○**고흥길 위원** 지금 성질이 거의 비슷한 법안에

대해서 세 분의 의원들께서 참 애써서 입법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입법발의가 될 때까지 행자부 측에서 ‘아직 정부의 안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 협의가 안 끝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질의를 한두 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까지 완전히 이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이것을 3명의 의원들이 애써서 만드신 법이니깐……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더 토론을 해 봐도 별로 그렇게 큰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우선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고요.

이게 아마 행자부 소관만도 아닐 겁니다. 행자부·국방부·기획예산처·건교부 등 많은 부처가 해당이 될 텐데, 그전에 그 관계부처 장관회의라든지 차관회의를 거쳐서 정부의 종합적인 안이나와 가지고 그 안과 같이…… 사실 정부가 기본 입법을 해 가지고 국회에 넘기는 이것이 정식 절차인데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우물쭈물쭈물쭈하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 여당의 정책위의장도 계시고 하니깐 정책위에서 정부여당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 넘겨주시면 국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애써서 발의하신 안하고 같이 소위에서 진지하게 다루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여지역에 대해서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좋은 자리에 50년 동안 주한 미군기지가 저렇게 차지하고 있는가?’를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세 분 의원님께서 대표로 국민들의 잠재된 요구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모습으로 저는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건의 법률안 제출이 어떤 기폭제가 되어서 반환공여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 그리고 자치단체의 이익 신장에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없었

던 내용인 국제조약이라든지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된 이런 안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검토하고 심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소위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관심 사항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심의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더 많은 논의와 논쟁을 거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자부장관께서 여러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과연 행자부의 업무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국방부라든지 외교통상부라든지, 다양한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주관이 행자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행정부를 대표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한 미군기지가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LPP에 의해서 평택으로 합해지는 지역은 어디이고, 또 합해지지 않는 지역으로 어느 지역이 지금 남아 있고, 남아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LPP에 추가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국가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앞으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창 의원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세 법안의 내용이 ‘철수지역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지만 이 기회에 공여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위와 위상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적용 범위 대상이 김병호 의원님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철수지역뿐 아니라 공여지역—공여구역—에 대해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권리를 제한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제한받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철수지역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남아 있는 공여지역—공여구역—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를 같이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창 의원**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나오게 된 동기는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가 시작된 이후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이전지역의 주민생활 대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그 토지를 앞으로 국방부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계획을 빨리 확정지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매각을 할 것인지, 국방 목적으로 계속 쓸 것인지…… 이것이 전부 국유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 사유지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징발할 때 환매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간한테 가야 될 그런 토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가려서 국방부가 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대한 그 문제는, 지금 미군 부대가 전부 평택기지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은 이미 지난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각종 특혜를,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각종 특혜를 뒤서 지원하는 규정이 이미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안이 되는 것은 미국이 있다가 LPP에 의해서 이전한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포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현재 당면한 것은 미국이 있다가 떠난 지역에 어떻게 특별히 지원을 해서, 사실상 생활기반이 갑자기 공백이 된 그 지역의 주민대책·생활대책을 강구해 주느냐? 그리고 오랫동안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이고 또 미군기지로 징발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낙후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제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여기에 지원을 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50년 동안 제약을 받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자, 지금 새로 이전하는 지역은 주민이 반대를 하고 물의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설명한 각종 특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50년 동안 미군기지로 묶여 가지고 각종 제약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았던 그 지역은 미군이 떠났다고 해서 그대로 둘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차제에 이 지역에 대해서도 대

책을 강구하자 이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위원님들은 반환공여지에 대한 무상 양여를 모른 것의 전부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역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비중이 약간 다르다고 보는데 도시에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문제는, 우선 미군이 있다가 떠남으로 해서 생활기반이 사실상 공백이 된 이 지역을 적어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공단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관광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 대책이 첫째입니다.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기지를 앞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쓰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에게 소위 행정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데에 정부에서 특별히 고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영순 위원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면 그 비용을…… 결국 무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을 팔아야 용산기지 이전 등 재배치계획에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것을 무상 양여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공식 의견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또 그 계획 수립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반환되는 땅 중에 얼마는 팔고, 얼마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환을 해서 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게 법안 내용에 나와 있는 종합계획을 정부에서 빨리 세워라. 그래야만 그것이 세워진 후에 무상 양여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매각은 얼마에 해야 되고, 그리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게 구체화됩니다.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께서는 ‘2008년까지 이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 뭐 그렇게 급히 다룰 게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2005년 안에 저희 지역구인 파주에 있는 6개 기지를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기지들이 전부 통합·이전을 합니다. 벌써 우리 지역은 상당한 부대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또 부산에 있는 하야리아 부대도 2005년에 이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이 땅을 공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대통령께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그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 간에 불신만 자꾸 증폭됩니다. 2005년 부대 이전을 이미 시작을 했고 완료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셔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서 정부의 방침이 확실히 정해지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막연한 기대와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기 위원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문희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은 철수지역 외에 계속 공여한 지역에 대한, 2500만 평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성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 철수도 하지 않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따로 배려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정성호 의원 이재창 의원이 말씀하신 공여지역은 새롭게 공여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여지역이 전체 다 반환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계적으로 일부 반환되고, 또 남아 있는 공여지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그것은 새롭게 포함되는 지역들이 아니니까, 기존의 공여지역에서 일부 철수되는 지역 말고 남아 있는 공여지역 그 주변도 같이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인 동두천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이라크에 1개 여단이 파병됨으로써 지역경제는 거의 파탄상태입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태만 해도 지역 내 총생산의 한 3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데 1개 여단이 빠지니까 지역경제가 공황상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까지 갈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저희 지역도 2개 캠프가 반환됩니다. 그

리고 2008년도까지 평택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이후에 완벽하게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일부가 반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또 해당 지역이 아닌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특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혜 중에서 가장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영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미군 기지가 있는 36개 지방자치단체 중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은 세 군데입니다. 3개 기지가 있는데 이미 녹지대—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미군기지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특혜가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미 그런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행자부장관이 주도하는 정부의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그 지역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에 배제되어 가지고 특혜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이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현송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노현송 위원 노현송 위원입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규모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들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규식 위원께서도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의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행자부의 입장을 답변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입장 정리를 아직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논의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해서 이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 그 이후에 대체토론을 한 번 더 한 이후 그런 다음에 소위원회로 넘겨서 이 법안을 성립시켜 가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 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서병수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입장이 조금 다르고, 이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자부장관께서 부임하신 지 한 달 반 정도 되셨는데 오늘 장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사실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부대기지 이전 문제가 어제오늘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내내 국방위라든지 건교위에서 이야기가 되고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본회의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임하신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회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 3개 법안 자체가 장관님께서 부임하시기 이전에 이미 발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미군기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러한 데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빨리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다른 부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지난 2004년 7월 22일 제10차 미려한미동맹정책 구상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2011년도까지 반환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2005년도까지 반환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10월 19일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특별법안, 그러니까 평택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지난해 12월 30일에 공포를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나가는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후속절차를 밟아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희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이나 이재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 또 김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이 그런 절차를 진

행시키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이것에 근거해서 재정 부담이 어떤지 도시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런 절차를 밟아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후속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6월 9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공용으로 사용하든지 공공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무상 양여라든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또 며칠 전에 김병호 의원님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해찬 총리께 말씀하실 때도 이해찬 총리가 ‘지자체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등등의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상 양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한 제반, 말하자면 지금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무상 양여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호 의원님께서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그 입장을 한번 들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의원 김병호 의원입니다.

방금 서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무상 양여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천명한 분이 국무총리인데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5조 5000억이라는 그 비용이 너무 많지만 좀 조정해서 이사비용을 줄이든지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유상으로 매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담이 덜 가도록 한번 조치를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총리가 그렇게 답변할 때는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의 인사들이 나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면

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고민할 것 없이 주한미군이 이전할 것이 아니라 철수해 버리면 돈 한 푼도 안 들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주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에게만 전부 부담을 맡기고 정부가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이 문제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서 정부에게 좀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환되는 공여지역을 누군가가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생긴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유상매각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년간 피해를 당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주민들만의 부담으로 사라고 했을 경우 그 부지와 관련, 시민들 누군가가 특정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전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공공용도로 사용된다고 할 경우 이것은 무상 양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군이 주둔했던 그 지역도 그 지역주민만을 위해서 주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주둔했던 것이고 또 철수해서 이전해 가는 평택 지역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의 특혜를 주는 지원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면서 50여 년간 주둔함으로써 거기에서 있었던 희생과 고통과 지역 발전을 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특별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 하야리아 캠프 부지를 현 시세대로 팔면 약 3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산개발연구원에서 기회상실비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손실액을 추정해 보니까 4580억 원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부 다 유상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서 빠른 시간 안에 이 3개 법안을 병합해서 심리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한다든지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의논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만일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공청회도 빨리 열어 주시고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반영되어서 이번 상반기 내로는 이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명규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장관님께 실질적인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바람에 환경 피해, 그리고 도시개발의 제한 등 많은 피해를 보고 또 특히 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지역의 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이에 따른 인허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요청하고 있고, 종합개발계획을 빨리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흥길 위원님이나 노현송 위원님, 서병수 위원님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3개 법안이 토론되고 나면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법안심사소위에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3개 법안의 주무부서가 행자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개 법안 제출을 계기로 해서 정부 내에서 빨리 종합개발계획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좀 내려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3개 법안이 어차피 공청회에 넘어가고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법안소위로 넘어옵니다. 넘어올 때는 행자부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정부의 법안이 법안소위에 넘어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 그래야 이 3개 법안에 대한 심사가 되지 정부안을 제쳐 놓은 3개 법안의 심사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주무부서가 행자부인 만큼 먼저 행자부가 주관해서 정부 내의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법안소위에 넘어올 때는 3개 법안 이외에도 정부안까지 같이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우제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제항 위원** 이번에 이재창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의원님이, 특히 파주나 동두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미군기지가 빠져나간 데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실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역구가 평택이라서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 이재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용 추정예산을 이재창 의원님은 2796억으로 하셨는데 실제로 국가의 부담이 덜 들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하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의원님은 2조 내지는 8조였는데 이 법안을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그리고 평택지원에 관한 법도 아직까지 각 부처하고 시행령 만드는 데 줄다리기고, 국방부에서는 가니까 다른 부처보고 도와주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토지 유상매각이나 무상으로 제공하느냐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서 경제가 살아납니까? 50년 동안 피해 입었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먹고살 수 있게끔 뭔가를 해 주려면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야지요. 이게 행자부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군 들어오는 데만 급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에 특혜도 없어요. 미군이 평택으로 와서 특혜를 줬다고 하시는데 천안만 못해요. 수도권 규제법으로 다 묶여 있던 말이에요. 공장도 60여 개 종밖에 안 풀렸는데 평택에 무슨 특혜를 줍니까?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특혜 준다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평택이 지원법에 의해서 특례를 인정받고 특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충청도에 있는 천안지역만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부 한 부처만 관련되지 않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법을 세 의원님이 열심히 하셨지만 이걸 무슨 수로 합니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정부에서 나가는 지역도 대책을 세워야지요. 최소한도 정부에서 기본 골격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고서 각 지역구에 있는 해당 의원들이 문제되는 것—빠져 있는 부분, 더 챙겨야 할 부분들—을 의원 발의로 해서 넘겨줘야 하지 무슨 수로 할 겁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제출해서 범위를 대충 해 줘야지요. 그래서 부족한 부

분 또 빠져 있는 부분은 다시 조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사전에 제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규모나 관련되어 있는 부처들이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출된 법안에 관련된 부처 의견들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무상양여만 하더라도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나 국방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다른 인허가에 관련된 기능까지도 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또 범위 자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불리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좀 무리인 것 같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정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제도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얼마만큼 해 드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나중에 종합적인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계속 논의해 봤자 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고, 또 아까 고흥길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시간을 자꾸 끌 게 아니라 일단은 본 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간사 간에 합의해서 공청회 일정을 빨리 잡아서, 어차피 공청회는 한 번 거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관계관과 전문가들을 참석시켜서 거기서 합의된 안을 도출해서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이재창 의원님,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창 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지금 법안에 대한 것을, 정부 측에서는 사실 새로운 법안이 아닙니다. 이미 총리실에서 논의도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5분 발언도 했고, 법안이 작년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는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회 명의로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행자부장관께 시한을 정해서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안을 받아 보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장관, 대충 언제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선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가 한번 모일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이용희**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논의가 끝나야 공청회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논의되기 전에 공청회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재창 의원** 정부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공청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집약해서 효율적인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각 위원님들께서 정부 각 부처 소관사항이 연계되는 것이 많다는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에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제안해 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실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때도 하다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소관부처를 통일원으로 했다가 행정자치부장관께서 행자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잘 마무리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만 하신다면 각 부처에 관계되는 것은 상당히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장관은 미안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장·차관이든 실장이든 회의를 해서 가지고 일정한 안을 도출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간사 간에 합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도 해서, 어쨌든 50년 동안 짓밟혔던 일들인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잘 선처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으로 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그냥 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7. 以北5道에關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8.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정부 제출)

19.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시24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9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그리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북5도가 월남 이북5도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이북5도의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북5도의 관장 사무를 조정하며,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북5도의 관장 사무 중 “반공사상의 고취”, “남하피난민에 대한 사상선도” 등을 삭제하고 이북5도 도민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 이북5도의 향토문화 계승·발전 등 실질적으로 이북5도가 할 수 있는 사무로 보완하고, 이북5도지사를 별정직에서 정무직으로 하며, 이북5도민 관련 단체의 화합과 역할 제고를 위해서 이북5도민회중앙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자원봉사단체 사이의 개발·연계·협력 등을 위한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단체 간 협력과 정보네트워크를 위한 협의체로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실장과 국장의 명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 차관의 통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여 가족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부처 기능을 제대로 나타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기관의 일반적인 체계를 실장·국장으로 하되 그 명칭을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무조정실의 수석조정관을 차장으로 변경하여 차장이 국무조정실장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주요 국정현안 등에 대한 정책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며, 셋째 차관의 통솔 범위를 줄이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 차관 2인을 두도록 하고, 넷째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여성부에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며, 다섯째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함으로써 국토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관리하는 부처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고, 여섯째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정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개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04년 9월 15일 정부로부터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62년 1월에 제정

된 이후에 단 한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북5도의 관장사무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는 한편,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북5도의 관장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962년 이 법 제정 당시에는 이북5도의 관장사무를 이북5도의 정치·경제 등 각 분야의 정보수집 및 연구업무, 반공사상의 고취 등 계몽선전업무, 남하피난민의 직업전도 등 난민구호업무, 원적지 재적확인 및 남하피난민 단체의 지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최근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됨으로써 개정안에서는 이북5도의 관장사무에 “반공사상의 고취” 및 “이북에 대한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등을 삭제하고 북한 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 간의 결연사업 및 월남 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지원, 이북5도의 향토문화 계승·발전 사업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남 이북5도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이북5도의 향토문화 계승·발전 등 실질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반공사상의 고취”는 삭제되더라도 이를 대신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 및 안보의식의 고취’를 관장사무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북5도지사를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1962년 이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법에서는 이북5도지사를 별정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8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차관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서 이북5도지사를 정무직(차관급)으로 정하여 그동안 차관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법률에서는 별정직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령에서 차관급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체계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4년 3월 11일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배치 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배치 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의 배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의 당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금년 3월 10일까지 이 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북5도지사는 별정직의 대우(1급상당)를 받게 되므로 앞으로 이북5도지사를 계속 정무직(차관급)으로 대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개정안대로 정무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북5도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이북5도민단체는 시·군민회 99개, 읍·면민회 813개 등을 포함해서 전국에 걸쳐 1500여 개의 도민회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북도민중앙연합회, 동화연구소, 유격군전우회, 새마을이북5도지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6·18자유상이사회,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등 7개 단체가 이북5도 청사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재정력 부족으로 임대료를 거의 미납하고 있으며 2004년 말 현재 약 1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료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관련 단체들이 정부에 이북5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고,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안 제8조에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월남 이북5도민 단체들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와 앞으로 이북5도 청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가 늘어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은 200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자원봉사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역할을 명시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 장려 및 보호조치

를 마련하고, 국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으로서 총 17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정책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사회 통합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보호·재난구호·방범·문화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과 기본 개념의 왜곡으로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책임성이 낮다는 일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상호 협력해야 할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간의 갈등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건전한 자원봉사활동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안의 제명 및 목적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이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기본법인 점을 감안할 때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사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13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을 수행하는 각 자원봉사센터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인권옹호, 부패 방지, 소비자보호, 공명선거 등 14개 유형의 봉사활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등 각 부처의 소관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법이라는 측면

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각 개별 법률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활성화 조치입니다.

본 제정안은 학교·직장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그 공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하도록 하며, 특히 자원봉사자를 보호함에 있어 보험의 가입 등 보호조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취할 사항들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제적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정립과 기능 제고 방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으며, 동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활동 분야 개발, 자원봉사처 안내·배치 등을 주로 담당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단체와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주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임의성,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성격,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2월 3일 정부가 제출해서 4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대해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며, 청소년 관련 기능을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는 사항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수차관제 도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단수차관제의 제반 한계점 및 복수차관제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과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이 차관 한 사람이 장관을 보좌하여 부처의 모든 업무를 지휘·조정하고 기관 내부 운영까지 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부 부처의 경우 차관의 통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심도 있는 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무직의 업무 부담 과중을 적절하게 해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국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화·다양화가 요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 복수차관제의 도입이 오히려 중앙정부의 기능 강화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고위직의 증설에 따른 인원 증가 및

예산 확대에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한해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함으로써 여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었습니다.

한편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상당수 국가에서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적실성을 통해 고객인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틀을 정착시키고 있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현행 정부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려는 4개 부처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은 차관 1인의 현행체제로는 품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위직 증설 및 예산 부담 등의 문제가 수반되고 있기는 하나 국회에서 폭넓은 토론을 통해 복수차관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의 복수차관 도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경제부의 경우 과거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한 기관으로 업무가 재정·세제·금융 및 경제로 구별되고 거시경제 및 재정·세제 업무를 총괄하여 조직규모 및 업무량이 크며 부총리 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정책조정 업무가 많다는 점이며 둘째, 외교통상부의 경우 외교업무가 정부·통상·문화·영사·대테러 등으로 다변화되고 국가 간 양자외교 중심에서 WTO 등 다자외교로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 외교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정책업무와 양자·다자 협력업무를 전담하는 외교업무로 전문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행정자치부의 경우 총무처와 내무부의 통합으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한 업무가 확연히 구별되고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관할하여 수행기능 및 조직규모가 크며 정부혁신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을 전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산업자원부의 경우 업무량이 무역·산업 및 자원·에너지로 확연히 구별되고 자원 고갈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확보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며 대체에너지 개발 및 미래 에너지 문제를 전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의 경우 부처의 업무가 기능적으로 이질성을 띠고 있으며 조직 규모 및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방대하고 사회적 현안 발생 비중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지 않은 여타 부처, 15개 부처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15개 부처의 경우와 1급으로 존치되고 있는 3개 외청—통계청·기상청·해양경찰청—의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둘째, 고위직의 인원 증가와 이에 따른 예산 수반으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복수차관제 도입이 국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복수차관 간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될 수 있는 역기능의 소지도 예견되고 있으므로 복수차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여성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 때부터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소관업무로 하였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2004년 3월 11월에 이관받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성부를 신설한 취지는 여성의 권익 증진에 있었으나 여성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업무가 이관되었고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가족이나 가정에 관한 중요성이 소외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가족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여성부로 이관하고 부(部)의 명칭도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여성부의 신설 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보건복지정책의 출발이 가족을 기본단위로 하는데 가족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여 권장토록 하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합리적인 개편방안인지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정책 기능 강화 및 소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청소년 관련 정책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에서 청소년 육성정책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청소년 관련 업무가 분리·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그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구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어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관련 업무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해 온 청소년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여 새로 설치되는 청소년위원회에 통합·이관하되 청소년위원장을 차관급인 정무직으로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만 정부조직에서 중앙행정기관과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특정한 업무 사안에 대해 심의·조정 또는 감독기능을 부여하려는 데 있는 만큼 개정안대로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 정책 및 집행업무를 권장토록 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과 별도 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등 정부조직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명칭 변경하고 국무조정실에 차장제를 도입하며 중앙행정기관에 팀장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용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예, 하시지요.

○**이재창 위원** 지금 일괄상정하고 일괄해서 심의하도록 하시는데 제정하는 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은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기에 때문에 심의를 개별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제청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여권 위원님들 의사가 어떠십니까? 여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기춘 위원**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갑자기 개별적으로……

○**이인기 위원** 17번, 18번 분리하고 19번 분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충환 위원** 질의를 다 하지 않더라도……

○**박기춘 위원** 사안별로 질의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묶어서 해 오다가 갑자기 따로 하자고 그래요. 빨리빨리 하자면서요.

○**이재창 위원**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법안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제정하는 법안이기에……

○**박기춘 위원** 지금까지 몇 가지 법안을…… 아까 주한미군하고 관련된 것도 세 가지 한번에 묶어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것도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도 세 분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했으니까 사안별로 질의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질의시간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창 위원** 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인기 위원** 위원장님, 처음에 세 건을 묶은 것이 무리가 있었는데, 묶은 기준이 동일한 성격이거나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 선을 끊은 것 같습니다. 14, 15, 16번은 동일한 성격 아닙니까?

17번, 19번은 우연하게 끊어졌는데 처음부터 17번, 18번, 19번을 분리해서 금을 그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마는 17번하고 19번, 18번은 법안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분리하자는 것에는 정당 간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법안 심리를 능률적으로 하자는 것이니까 분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창 위원** 의견이 없으시면 안 내시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박기춘 위원** 그러면 같이 다루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이용희** 야권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인기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이용희** 터놓고 얘기하시라고. 내내 잘

하다가 여기 와 가지가 딱 걸면 어떻게 해요?

○이인기 위원 위원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항목을 보면 전부 같은 법입니다. 경비업법 2개, 도로교통법 2개, 주한미군 3개…… 이것은 법안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희 여권에서는 다른 이의 없으세요?

○홍미영 위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뭔가 저의가 있는 것 같아서 괜히 경계가 돼요.

○이재창 위원 일괄 상정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金洪春 委員 다른 법은 간단하니까 같이 하고 정부조직법은 집중을 하자는 것이지 다른 복선은 없습니다.

○이재창 위원 다른 복선은 없습니다. 심의를 잘 하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용희 이것 가지고 시간 끝 것 없고 그렇게 하십시오. 야당 의견을 존중해서 할 테니까 나머지 법안 할 때 괜히 시간 끌면 안 돼요.

그러면 이북5도에 관한 법하고 자원봉사법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예, 김기춘 위원님!

○金洪春 委員 김기춘 위원입니다.

이북5도에 관한 법은 행정자치부가 발의를 한 것입니까, 통일부라든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같은 데에서 이 법을 이렇게 고쳐 달라고 해서 소관이 행자부이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金洪春 委員 여기 보면 40여 년이 지난 최근의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최근에 화해협력의 기운이 매우 높다는 데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화해협력의 시대가 되었느냐, 즉 대결과 냉전의 시대는 끝났느냐라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해요. 아직 대결과 냉전은 한반도에서만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최근 우리 국내에서의 변화는 지난 문민정부 이후에, 특히 뒤의 정부 들어와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그간에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金洪春 委員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냉

전이나 대결이 남북관계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것이냐, 아직도 대결과 냉전은 한반도에서만 어느 정도, 정도의 문제이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느냐 그 점을 묻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대결의 국면은 많이 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金洪春 委員 많이 지나서 완전히 없어요? 대결은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남북대치는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화해 부분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洪春 委員 물론 화해 부분이 많지만 대결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이지만 장관 밑에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경찰이 있어요. 치안장관회의를 하면 법무부장관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金洪春 委員 치안이라는 우리나라 체제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은 ‘대결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공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적절한 답이 아니고 그런 말을 계속하면 행자부장관 자격 없다는 말 듣게 됩니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 한반도 남북관계는 일면 대결, 일면 화해 이런 것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1953년 7월에 휴전이 성립됨으로써 열전은 끝났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냉전과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령 72년도에 7·4공동성명이 있었습니까. 이후라 씨가 평양에 가고 그랬지요? 그것은 일종의 화해협력의 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 92년도에 연형묵하고 정원식 총리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기본합의서를 합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金洪春 委員 언제 한번 읽어 보세요.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한반도는 정말 화해협력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북은 자꾸 도발해 왔어요. 김영삼 정부 때에는 김일성과 정상회담이 합의되었다가 김일성이 돌연히 사망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어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金洪春 委員** 이루어지지 않는 것지만 그것도 일종의 화해협력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6·15공동성명 했습니다. 매우 가시적인 화해협력의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서 그렇게 공동성명하고 온 뒤에 서해안에서 해군끼리 군함이 붙어 가지고 전투가 일어난 것 봤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金洪春 委員** 그런 일종의 열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에서 핵 보유선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북이 핵을 가졌다는 것은 단군할아버지 이래 우리 한민족이 당면한 최악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 던져져서 터지든지 하면 한민족이 몰살되는 중대한 국면에 돌입해 있고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을 지상에서 봤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협력이 되었다고 하면 뭣하러 3·8선에서, DMZ에서 100만 대군이 서로 총부리를 마주하며 해마다 국방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결이 끝났다면 감축하고 쌍방이 군대를 줄이고 총부리를 거두어서 그 돈을 국민경제 발전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대결이, 화해하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대결의 국면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도 유지하고 국방도 하고 또 북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만든 것도 미국하고 전쟁하려는 것입니까, 일본하고 전쟁하려는 것입니까? 중국적으로는 우리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만약에 핵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시기에 우리 남쪽에 대고 '너희들 북에서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던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쪽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무조건…… 일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대결은 끝났다, 화해협력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치안을 책임진 치안장관으로서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이북5도 사무에 반공사상 고취 및 이북에 대한 국시선전 이런 것을 빼야 되겠다고 써 놓았어요. 지금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싫고 1인 독재가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탈북자가 연이

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고취시키고 북한체제는 잘못되었다고 교육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라고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김정일 정권 찬양·고무나 하라는 말이나라는 반론에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 보면 선무공작 이런 것이 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저쪽 체제를 뒤집자고 하는 것인지, 그런 매우 민감한 정치활동을 이북단체가 하는 것은 화해협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고치는 것은 몰라도 반공사상이나 공산주의가 나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적절한 것인데 이것을 구태여 대결이, 냉전이 끝났으니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이북 눈치 보고 이북정권에 대해 비위 맞추는 그런 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사실은 반공사상 고취 등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한 이유는 아시는 대로 지금 반공법이 폐지가 돼 있고 그걸 유지해 왔던 기관인 반공연맹이라는 것도 자유연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공이란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법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런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金洪春 委員** 아, 그렇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金洪春 委員** 그러면 반공연맹 대신에 자유총연맹이 생겼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金洪春 委員**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교육시키고 고쳐 써 넣으면 되겠네요? 그런 점을 소위원회에서 법안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 시작한 김에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부 만들 때에 여성부가 필요하냐 이렇게 했는데 당시 정부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정책에 관한 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여성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유아 교육을 교육부에서 거기로 떼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여성가족부라 해서 가족 업무를 넣겠다 하는데, 가족이라는 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남녀가 혼성되어 있는 건데 이 가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을 가져야 하는 주택이 있고 가족 중에 실업자

가 없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애매한 겁니다. 그러면 여성부에 무슨 실업 문제, 주택 문제, 나아가서는 가정의 치매노인들 참 큰 문제인데, 여성 가족 노인 청소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부서로 했으면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여기 갖다 붙이려 하지 말고 여성정책에 관해 전념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지금 가족에 관해서 할 부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근태 장관이 보건복지도 잘 하고 있고 그런데 뭘 이렇게 쪼개서 여기에다 갖다 붙이려 하는지, 말하자면 인위적인 관할 분야의 확장 이런 데 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행자부에서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참고자료'라는 걸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본 위원은 한나라당 위원으로서 또 과거에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시대는 정부의 규제는 가급적 줄이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정부 조직 변화를 보는데, 각 부처의 차관이 일이 너무 많으면 일을 떼어서 민간에 쥐 버려라 이겁니다. 정부가 틀어쥐고 무슨 일을 자꾸 많이 하려는 것이 오늘날에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간의 자율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연구검토한 걸 보면 최소한의 기관부터 하자고 해 봤는데 그 1순위 그룹에 산자부와 재경부가 들었더라고요. 최소한으로 하면 산자부와 재경부를 넣어야 되고, 사회적 현안의 발생 정도를 보면 재경부와 행자부가 1등이더라고요. 또 차관의 업무량이 많은 기관의 순서로 보면 재경부와 행자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티디해 놓은 이것을 봐도 좀 오락가락해요. 어느 것을 확실히 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가 명료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정부의 규제는 가급적 줄이고 작은 정부가 되어야 된다, 차관 업무가 많으면 과감하게 민간이나 예하에 넘기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다음에 여러분이 연구한 여기에 봐도 각 부처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틀린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4개 부처를 하겠다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와 같이 확대하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가사 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애매하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우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은 일 잘하는 정부 그다음에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지향점이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현재의 조직을 민간에 떼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떼어 주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그런 저생산성의 위치에서 해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기능을 기왕이면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차원에서의 조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관을 안 두고 밑의 기능을 다 뺐을 경우엔 밑의 기능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기능 조직 내에서 1 장관, 1 차관이라는 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우리나라 수준 이상 나라에서는—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洪春 委員** 좋습니다. 행자부에서 차관을 둘 두면 그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할 복안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희 행자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차관은 1차관으로 해서 인사와 기획과 그런 것은 다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 기능 중에서 정부 혁신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어 주고 정부 내에서의 혁신을 선도해 주는 기능을 독립적인 분야로 해서 전담시키려고 그러합니다. 그 차관은 기존 차관과 업무 혼선이 전혀 없습니다.

○**金洪春 委員** 그러니까 새로 하나 만드는 차관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러니까 정부 혁신에 관련된 차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범정부로 하고 있는 혁신 기능에 대해서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金洪春 委員** 지금 행자부에 차관 혼자 있다고 해서 혁신이 안 되고 지방행정에 대한 감독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사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준의 양질의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인해서 좋은 걸 해 주겠다는 취지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기준을 놓고 검토를 하면서 그것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선택 순위가 되겠습니다.

○**金洪春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명규 위원**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관장사무에 계몽선전업무를 빼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반공 관련……

○**이명규 위원** 반공사상 고취라든지 이북에 대한 국시선전 이런 반공하고 관련되는 건 다 빼겠다는 얘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이명규 위원** 과연 반공사상 고취라든지 이렇게 필요가 없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제5조(도지사) 보니까 현행은 “별정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정무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직으로 한다는 얘기는 장·차관으로 보하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전부 차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 주지 않으면, 별정직은 지금 차관급이 없거든요.

○**이명규 위원** 현재 지금 차관급으로 보해져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있습니다. 경과 규정에 의해서 금년까지 되는데 그걸 바꿔 주지 않으면 1급으로 떨어집니다.

○**이명규 위원** 현재 차관급으로 되어 있다면 얘기가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인데요, 이것 전문위원이 지적을 참 잘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법을 왜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법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물론 말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합해서 하자는 얘기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문광부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부의 여성자원활동센터 이것하고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겁니까? 또 행자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도대체 센터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과연 자원봉사자가 이 법에 의해서 통합 관리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통합 관리라는 차원보다는 다기화되어 있는 지원 기능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그 말단 조직을 만드는 거고 그 위원회나 협의체는, 기왕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지만 그 협의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해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관련 단체간에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명규 위원** 그것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 현장에 가 보십시오. 저도 대구 북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있으면 뭇합니까? 아무것도 통합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같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회의를 한다니까 단지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것도 아무런 예산 지원도 없고 그냥 옥상옥으로 하나 만들어 놓아서 부르면 가서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오는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의문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잘 지적해 놨습니다. 96년부터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유명무실하고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지원되는 돈 갖고 인건비 주면 딱 맞아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를 왜 또 만들어야 됩니까?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희들 사실은 자원봉사의 수요는 많이 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선진국이 되면서 스스로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데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해 주는 기능이라든지 지원 기능들이 제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보호를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에 의해서 커버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도 없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앞으로

로 늘어나니까 차제에 그걸 제도화해서 지원할 근거를 만들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제도화 다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만든 자원봉사센터만 하더라도 이 법 없이도 금방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원봉사자를 누가 갖고 있는지 현장에 가 보세요. 각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빼고 나면 자원봉사자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문광부의 자원봉사자, 여성부의 자원봉사자 이거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건 각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외에는 자원봉사자 실체가 없어요. 그걸 굳이 보험을 하고 교육을 해 준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뭘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지방자치단체한테 보험 넣고 뭐 해 주고 뭐 해 주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법을 나중에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법이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부처의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권오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권오을 위원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에 대해서 장관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 이 법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할 때 여기 적용 대상이 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대상 단체는 현지 각 지방 조직으로 나가 있는 센터가 됩니다.

○권오을 위원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권오을 위원 그걸 다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권오을 위원 거기에 국가 예산 지원도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그것을 총괄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관련 단체 협의회가 하나 있고요, 그게 기존에 있습니다마

는 그걸 포괄하고요. 지금 아시는 대로 보건복지부나 문화관광부나 여성부나 각 기관별로 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협의체를 강화해 주고……

○권오을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나 문광부나 여성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 해당되는 봉사센터도 같이 통괄이 됩니까, 별도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법적 근거를 뒤 가지고……

○권오을 위원 그 협의체에 별도로 또 예산 지원을 하겠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산 지원의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권오을 위원 그다음에 현지에서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기관이 새마을이든 적십자든 바르게살기 등 여러 가지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관련 단체가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권오을 위원 그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각 부처별로 나와 있는 자원봉사 관련 단체 전체를 포괄하고 네트워킹하는 협의체를—지금 법적 외에 그 단체가 있습니다마는—법 제도하에서 운영을 하게 하고요……

○권오을 위원 그 협의체 안에 기존의 예산 지원을 받는 봉사단체도 다 포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포함됩니다.

○권오을 위원 왜 제가 이걸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이걸 받아 봤을 때 굳이 필요 없는데, 옥상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명규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예산 지원도 없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5인 1조나 10인 1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노인들한테 봉사하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분들 아무 예산 지원 없이도 실제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옥상옥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도무지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이야기를 좀더 들어 보겠지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옥상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법률에 의해서, 또는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봉사 관련 단체에 대한 법적 지위나 그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기왕에 그런 관련 단체를 묶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단체의 의견 종합과 네트워킹을 해 주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협의체 속의 한 일환으로서 자원봉사센터를 네트워킹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협의체는 전체를 포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권오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문제 삼느냐 하면 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나와요. 새마을운동이 나와서 예산 지원해 주고, 바르게살기운동이 나와서 예산 지원해 주고…… 이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다가 3년 있다가 정부가 바뀌면 뭐를 하나 또 만들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것이 옥상옥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필만드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권오을 위원** 하여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 정부 측의 이야기나 우리 대체토론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별도로 한다는 데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한다, 기본적으로 여성부는 한시적인 부처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성부가 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부로 하는 것은 여성 플러스 가족 기능을 그쪽에 독립적으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권오을 위원** 왜 제가 여성부를 한시적인 부처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상당히 미미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어느 정도 돕자는 취지에서 여성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의 추세를 보세요. 모든 시험을 치면 대체로 여성들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80%, 10~20년 후가 되면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거의 남성하고 비슷하게 진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처 17개 장관 중에 몇 개 부처인지는 몰라도 한 반 정도 여성장관, 아니면 3분의 1 혹은 3분의 2의 여성장관으로 들어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굳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하나의 업무를 더 갖다 붙여서 여성가족부로 개편을 해서 부처의 불균형을 키운다면 여성부를 설립했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가족이라는 자체가 여성들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한 남녀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꾸려 나가는데 억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느 분이 시키셨어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것은 아니고요. 요새 가족 해체 개념, 특히 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족을 하나의 통합 단위로서 다룰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것을 설정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아동복지나 가족 이렇게 죽 누어서 하고 있는 기능들을 합쳐서 가족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다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부에 가족 기능을 붙여 가지고 만들자, 외국 같은 데를 보면 아동복지부로 복지 와 아동을 같이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된 것입니다.

○**권오을 위원** 외국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중앙부처가 있는 것은 저는 못 봤거든요. 혹시 여성부라든지 여성가족부 이런 부처가 외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독일의 경우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독일 한 나라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권오을 위원 이 문제는 차라리 각 부처의 장관에 여성장관을 많이 기용하고 여성 인력을 사회에 진출하도록, 능력이 있으면 올라가도록 이렇게 사회에 큰 물꼬를 터 가는 것이 맞지 인위적으로 여성가족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개념은 여성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저의 보수적인 시각인지는 몰라도, 여성부의 역할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어느 정도 일정 시점까지 이르렀을 때는 각 부처에 같이 편입해서 여성들이 거기에서 역할을 맡는 것으로서 나름대로 부처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이나 부처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차관 2인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2인씩입니까? 많으면 3~5인으로 해도 되고, 없으면 없어도 되는데 왜 2인씩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발 연대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 개발이든 국가 발전의 기관차·견인차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 민간사이드가 굉장히 커지고 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정부조직을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국가와 정부는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복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에 차관 2인을 둔다고 하는 것도 인위적이다 이거지요. 차라리 많은 데는 3~5인을 두고, 나머지는 1인으로 두고 이게 맞지 기계적으로 2인·2인·2인 하는 것은…… 시중에 ‘힘 있는 부처는 2인씩 두고 힘없는 부처는 하나씩 두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기능과 규모, 또 업무의 성격을 봐서 복수직을 1인에서부터 3인이나 4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전

통이 1장관, 1체제로 굳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능이나 조직이나 그 업무의 성격을 봐서 복수제로 한번 도입을 하고, 그렇게 금년 한 해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민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조직으로서 좋다고 판명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복수차관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4개 부처만을 선정했습니다.

이 복수차관제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1장관, 1차관으로서의 업무는 도저히 한계가 있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험적 운영을 통해서 성공할 경우 다른 부처로의 확산이나 또는 몇 개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정부 내에서, 또 국회와 협의를 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위원님! 여성 위원 한 분도 발언을 안 하셨으니까 하셔야지요.

○홍미영 위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중에서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칙 내용에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기왕에 구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추가될 부분으로 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관련한 구성 조직체계에 대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부분은 생략하고요. 제가 행자부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해 주실 것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북5도민 단체가 2004년 말 현재 약 17억 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법으로 제정되어서 이 임대료에 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관례상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미납금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북5도 관련 단체에 사용료 미납이 있습니다. 이북5도 단체는 성격상 다른 단체와 달리 실향민을 위한 그런 기능들을 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에 비해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형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법을 하면서도 그것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북5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납되어 있는 17억은 과거에 납부 면제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미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으로서 받기는 어렵지 않으나, 그리고 그것은 실향민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미영 위원** 그 단체가 이후에 무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유아무야 넘어가는 것은 이후에 관례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간에 어떤 단체가 얼마만큼 미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미영 위원** 저도 이왕 질의한 김에 그냥 계속해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아니지요.

○**홍미영 위원** 다른 분들도 다 지나갔는데 저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희** 김기춘 위원이 다 했으니까……

○**홍미영 위원**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정부질문에서 충분히 질문도 되었고,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이나 그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는 굳이 여기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다른 자리에서 저한테 “행자부차관의 경우에 있어서 제1차관은 지방자치분권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제2차관은 혁신에 관해서 한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답변 중에서는, 지방자치 분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에서 제1차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빠지고 그냥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길래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제가 그 말씀을 잘 전

달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1차관은 기존의 기능에다가 지방자치를 포함한 모든 기능을 하고요. 2차관은……

○**홍미영 위원** 그 부분에 역점을 좀 더 두는 것으로 저는 요구를 하고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그렇게 합니다.

○**홍미영 위원** 그다음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여성부와 여성위원회, 여성가족부에 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성위원회에 속한 위원으로서 참 듣기에 오해될 소지들, 또 아직 정보가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김기춘 위원님이 여성부가 한 일에 별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대하셨던 것에 비해서는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성위원회에서 죽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별일이 많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같은 위원들끼리 공유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런 점에서는 여성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행자위원님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님들한테 여성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날 여성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는 다 놓고 의원님들이 국회에 안 나오시는 동안에 아침 9시부터 2시 반을 넘는 시간까지 여성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하게 다른 내용이 정부조직법 중에서도 여성가족부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의견제시는 여성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께서 ‘행자위에서 정부조직법 중에서 여성가족부를 다루니까 여성위에 의견 제시해 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달아서 지금 행자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성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전달되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행자위에 제출된 여성위원회의 의견서에 대한 요지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확산, 결혼·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의 문제 등이 가족을 둘러싼 환경에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족정책이 거시적이고 총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한나라당과 민주당·민노당 위원이 다 포함된 여성위원회의 의견서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출산과 청소년 등의 문제 같은 것은 가족정책에 근간이 되는 정책으로서 이후에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되어야 된다는 의견서를 여성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며칠 뒤에 우리 국가에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가서 할 여러 얘기 중에는 여성의 문제들이나 우리 사회의 성에 관한 평등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진전되었는가에 대해서 장관에서부터 우리 위원들, 진수희 의원님이나 김애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가서 보고하고 토론해야 될 그럴 위치에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를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꼭 여성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자부장관께 물겠습니다.

지금 여성부의 영문표기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죄송합니다.

○홍미영 위원 알아 두십시오. 여성부의 영문표기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Gender Equality'로 되어 있습니다.

○홍미영 위원 예, 'Gender Equality'이지 'Women's Equality'…… Women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성부'라는 표현은 여성에 대한 성적인, 생물학적인 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Gender라는 것은 사회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영문표기가 여성부의 역할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양성 평등한 부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를 진전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Gender Equality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가족부는 Gender Equality and…… 가족을 지금 family라고 표현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것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을 그 안에, 여성 중심의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성 점 찍고 가족입니다, 보건 점 찍고 복지이고, 문

화 점 찍고 가족인 것처럼. 그런 점에서 이게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가족부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단지 이 부분에서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즉 하부체계의 일원으로 일해 왔는데 갑자기 사회복지사들이 그러면 보건복지부 쪽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지시를 받았을 때 혼선이 안 생기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사가 일선 동사무소—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지만—에서 업무를 하도록 지침을 받거나 예산을 받거나 하는 것은 중앙 복지부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과를 통해서 받는데 대구의 경우도 여성정책과를 통해서 받고, 서울·광주 등등도 여성정책과 이름 아래서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중앙 보건복지부의 지시 아래서 움직이거나 중앙에서 여성가족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에 혼선이 오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미영 위원 제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가족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느 위원님도 부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11대 주요 시책과제 중에는 가족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족 업무의 중요성을…… 실제로 한다고 그러면 그 중요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맡아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성가족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한다면 가족정책이 주요시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그간에 가족정책을 해 와도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가족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주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맞습니다.

○홍미영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지금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세계적으로 우리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2만 불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중점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내가 홍미영 위원님 때문에 할 말을 못 하겠는데, 사실 이게 국민의 정부 때 잘못됐습니다. 여성부 만든 것이 여성을 크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여성을 비하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호주제도 다 폐지해 버리고, 초등학교 교사 90%가 여성분들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성을 장관으로 많이 기용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지금 여성부, 여성가족부니 뭐니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다음은 노현송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현송 위원 노현송 위원입니다.

아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1996년부터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고, 다만 그것이 법률적 근거가 좀 미약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자원봉사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재정적 지원도 한다는 취지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따라서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의 역량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일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사조직화·홍보도구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말하자면 자신의 측근을 그 센터의 장으로 임명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완전히 선거운동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직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의 자원봉사센터의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

으로 근거를 만들어 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도 그런 면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도 정치 금지에 관련된 것을 명확하게 명문화했고 거기에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정파성 원칙을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하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노현송 위원 그런 선언만 갖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 소위 때 정부 측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문화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칫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자치단체장의 사조직이 되어 버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명문화된 대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송 위원 또 한 가지는 가족 기능의 여성부 이관 문제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장관님께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계하고 가정계가 가족 기능의 여성부 이관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복지계나 여성계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단체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가족 기능 업무를 이관해서 ‘여성가족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복지부와 여성부와 같이 계속 검토해 왔고 복지부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그쪽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해 왔거든요. 제가 직접 만나서 하지는 않았고 간접적으로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나 개인이든지 간에 소관 부서가 바뀌는 것을 대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복지 관계는 이해했었고, 가정 관계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견이 있다는 것은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노현송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 속하는지에 따라서 그동안에 해 왔던 것과 다른 여러 가지 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다, 단순히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을 반대하는 데는 조직 간에 또

는 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여성 단체 중에서도 가족과 관계된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학계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반대하느냐,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소위 때 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알겠습니다.

○**노현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창 위원** 정부조직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질의하고……

○**위원장 이용희** 기왕 내친 김에 하시지요. 아까 김기춘 위원님도 하고 다 했는데……

○**이재창 위원** 사정이 있는 분은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이용희** 빨리빨리 하세요.

참고로 이것 빼고도 아직 8개 법안이 남아 있어요.

○**이재창 위원** 아까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박기춘 위원**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지 언제 그렇게 하기로 의결했습니까?

○**이재창 위원** 분리해서 할 사람은 분리해서 하고 같이 할 사람은 같이 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 가지고 자꾸 신경을 써요?

○**위원장 이용희** 말씀하시라고요.

○**이재창 위원**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제를 실시한 취지가 사실상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온 분들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그럴 필요가 다 없어졌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 그것을 1호로 넣든 2호로 넣든 해 가지고 적어도 반공연맹을 자유총연맹으로 한 취지를 살려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식 계도라든지 등의 임무는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2호로 하든 1호로 하든 해서 그것을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다음 현행법에도 있는 가호적 취적과 관련해 적어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확인을 해

야 된다든지 하는 제 증명 의무가 있을 텐데 적어도 이것은 행정관청성을 가지고 있는 이북5도의 업무로 넣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8조에 이북도민단체에 대해서 국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현행 새마을육성법이라든지 다른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적어도 이게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이북5도에 관계되는 단체에 대해서 무한정 무상으로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제한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라든지 더 구체화해서 적어도 대통령령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공공성이라든지 상당한 이유에 대한 것을 구체화해서 규정하도록 하고 법령 문안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만약 이렇게 규정하면 조세특례법에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보다는 국유재산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무상사용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하면 관리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 주어야 그 뜻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소위원회 심의 때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과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육성·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법안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하고 중복되거나 자칫하면 잘 하고 있는데 괜히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전부 법제화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육성법이라든지 진흥법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된다든지 보호해 줘야 된다든지 육성 중심의 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접근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조직을 중심으로 한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용이라든지 보호·육성

측면보다도 중앙회를 둔다든지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거의 새마을단체처럼 관료화되는 우려도 있고 또 하나 사실 지구당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 조직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상당히 사회에 물의를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까 장관께서는 제2조제2호에 '비정파성'이 있기 때문에 장치가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치활동 금지만 단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봉사활동이 아닌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느냐, 물론 참정권을 제한하는데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만들면 장을 설정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조직이 필요하다 또는 감독이 필요하다 또는 보호, 여기에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는 보험가입 규정이 있지만 최소한도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기본법령으로서 하위법령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기속력을 가지려면 조금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야 기존에 있는 법령에 보호라든지 육성이 없다면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오히려 그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면 좀더 체제가 이렇게 죽 나열식인 것보다는 중점을 두어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되 본 위원의 생각은 육성·진흥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는 법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충환 위원** 이북5도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의 '가, 나, 다' 세 항을 표현을 부드럽게, 불편하지 않게 바꾸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존치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되는 것을 보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안 제4조제2호의 '나'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죽 썼는데 앞으로 이탈주민이 처음에는 500명, 다음에는 2000명, 다음에는 5000명으로 매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우선 어디에 찾아가겠습니까? 안기부 이런 데서 교육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고향의 청이 있다는 것을 알면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북5도청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 관리를 하듯이 비슷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이북의 주소 관리나 본적 관리가 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을 개정하는 주 취지가 집세를 안 냈기 때문에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관련 단체들에게 집세를 낼 만한 예산을 지원해 줬더라면, 말하자면 오른쪽 주머니의 돈을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단체들이 그것으로 집세를 내면 되니까요. 그런 방법은 없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정도의 신축성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법까지 안 고치고 국유재산법에 걸리는 문제도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일찍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중요한 법이 늦게 나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깊이 개입된 사람들은 이 법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고 조금 더 관점을 달리 보면 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선진국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충분한 제도와 지원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서 제15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이라는 말을 빼고 '자원봉사협의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둘 수 있도록, 꼭 전국 자원봉사협의회로 해서 국가가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도 30~40개씩 되는 단체들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연합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보호법을 보면 당초 처음에 만들 때는 전국 단위의 소비자보호단체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소비자보호협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법이 한 10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지방자치가 안 되어 있을 때라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지방자치가 다 되어 있는 시대기 때문에 자원봉사협의회를 전국 단위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자

치단체 단위로도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법안에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선 이북5도청과 관련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북 실향민이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의 북한에 관련된 증명이나 민원사항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하는 방향으로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법이 바뀌어서 반공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다는 차원에서 삭제를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반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은 이북5도청이 또 관련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실향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지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잡히는 업무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다른 정치의도에서 표현을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고 집세를 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 산하단체—작은 단체—들에 대해서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을 따는 데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되었는데 지원은 또 해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북5도청에서 사용하시는 것만큼은 쉽게 해 드리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한국을 빼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각 부처별로 또 각 단체의 성격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어떤 형태든지 한 차원에서 네트워킹을 해 주고 필요한 지원을 묶어 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기능도 만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도 단위처럼 중간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 협의회로 하면 구성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단체 차원으로 내려가면 다양한 이름의 단비봉사단, 머리 깎는 단체 등등 많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해 줘야 자치단체가 그에 대한 지원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양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형일 위원** 법안이 이렇게 많이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을 때 가능하시면 법안심사소위에 소속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기회를 양보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지 않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이 한국 행정체계가 지니고 있는 계선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가족부 문제가 나왔는데 여성가족부로 바뀌게 되면 여성부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여성부는 이른바 젠더 갭(Gender gap) 내지는 젠더 프라블럼(Gender Problem)을 다루는 부지 패밀리 폴러시(Family Policy)를 다루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젠더 문제에다가 가족정책이라는 문제를 끌어들이게 되면 결국은 여성부를 만들었던 고유의 정체성이 변질된다고 행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까 홍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성부이기 때문에 가족 기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그리고 가족기능을 같이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가족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단위 업무의 범위 면에서도 그렇고 업무의 성격 면에서도 그렇게 훼손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복지부의 한 파트로서 취급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가족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써 발전시켜 주자는 방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양형일 위원** 기능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가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정책과 부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홍 위원님께서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성부에다가…… 여성부를 만들 당시의 근본 성질과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 새로운 기능을 덧붙여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젠더’하고 ‘페밀리’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누차 반복하지 않더라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위원회 역시 차관급으로 해서 집행력을 갖추어 가지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자치부장관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인기 간사 말씀하세요.

○이인기 위원 이북5도민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에 계몽·선전 업무에 관한 반공사상의 고취 이 조항에 대한 변경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대체입법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관장업무의 모범 근거라 할 수 있는…… 또 법률상에 보면 그 법은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개정 문제 변경의 추이를 봐 가면서 관장업무를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원칙이 정해지면 그 밑의 것은 실무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위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게 될 경우 이북5도민에 관련된 대표자들을, 지사라든지 행정에 관련된 분들을 심의에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실무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법률안은 이 법이 없더라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단체가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이 법안도 소위에서 심사할 때 여기에 관련된……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할 때 중앙단위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A B C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심사에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시고 의사 일정 제17항……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손을 다섯 번 이상 들었거든요. 어째서 배제시키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장 이용희 안 보였어요. 하세요.

○이영순 위원 안 보이셨던 거예요?

○위원장 이용희 화낼 것은 없고 웃어 가면서 하자고.

○이영순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해 봐요.

○이영순 위원 이인기 간사님께서 정부조직법은 논의가 길어질 테니까 따로 하자고 하셨을 때 합의가 되었으면 그대로 운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그것을 조정을 안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양형일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그때 제가 같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저는 의사진행발언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질의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조정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형일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소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소위 위원이 아닌 분들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순서대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아까부터 제가…… 몇 시간 됐습니다.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이용희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발언신청을 몇 자 적어서 보내 주세요. 여기 앉아 보면 알지만 잘 안 보여요.

○이영순 위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일 위원 이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영순 위원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양형일 위원 질의를 신청해서 질의한 것이고 “발언권 얻은 김에 의사진행발언을 첨언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북5도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있던 목적을 생략하고 다른 부분을 넣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변화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이북과의 긴장관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긴장관계 해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색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수복의 대상으로만 명명한 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수궁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대에 맞게 변화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4공동성명이나 6·15공동선언의 내용에도 이런 부분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북5도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 문제는 우려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정부 방침이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부 지원이 아닌 자체적으로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요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라고 설명은 하시지만 그 특별함이라는 것이 각 단체마다 단체 나름대로의 특별함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에서 우려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북5도위원회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탈북문제,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다 ‘우리도 형평성 있게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탈북주민 사업을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무로 새롭게 변경하는 안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업무의 중복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탈북자 지원에 관련해서는 다른 정부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따로 중복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무상사용 부분은 사실 모든 탈북자나 이북과 관련된 모든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필요한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용 기준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을 정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문제는 협조해서 지원한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 문제는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행자부로서 정부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 또는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관련부처와 협조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북5도위원회가 차관급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이영순 위원 이것을 정무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개정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북5도민들에게 주는 위안이나 지원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다른 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이것은 현재 차관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가 바뀌다 보니까…… 종전에는 별정직이면서 차관급으로 인정해 주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정무직으로 바뀌니까 규정상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의 불일치를 해소해 줌으로써 현상을 유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상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현재 차관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복수차관, 각 부처마다 단수차관으로는 일이 힘들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복수차관 조직개편까지 하려고 하시는데 이북5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기구에 차관이 다섯 분이나 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수행일정을 살펴보니까 도민단체의 격려 방문, 행사 참여, 축하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업무 효율성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적정한지도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

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이북5도에 대한 단체 지원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들여다보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일단 법은 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센터를 만들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의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라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본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서 협의회의 법적 지위 보장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법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계속 상설화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이영순 위원 이런 형태의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각 지역의 지자체에 있는 센터와의 연계에도 맞지 않고 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것이 과연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사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이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이 제출했었던 법이기는 하지만 각 단체별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견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말씀 다 하셨어요?

○이영순 위원 예.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유정복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교위 출석 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유정복 위원입니다.

오영교 장관님, 행사부장관 되셔서 처음 행사위에 출석하셨는데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행사부업무가 많이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이북5도가 갖는 특별한 환경과 정서를 감안할 때 반공사상의 고취 삭제는 큰 흐름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나 안보의식의 계도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북5도민들의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월남 이북5도민에 대한 제 증명 발급업무를 관장사무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면 타당합니다. 지금도 보증을 서 가지고 5도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법안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을 보면서 좋은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까마는 과연 시대흐름에 부합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의도된 바대로 하고 통제하는 형태가 되는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의 제 기능을 갖는 데 역행할 수 있는 소지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반면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또 그 실무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더욱이 자원봉사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까지도 마련하고 또 그것을 법인으로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이제는 자율적인 원칙에 의해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것이 16조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거식의 관변 단체가 되거나 또는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가장 민주적으로 효율성을 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오히려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앞으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게 민간부문이 잘 되도록 뒤에서 장려하고 또 고취시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봐서 이 법 발의의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답변할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 증명이나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것은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각 부처, 각 지자체 간에 많이 다기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못하는 데도 있고 또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정리해 주고 또 정부가 지원할 때도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현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요로 제기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관변화나 또는 자율을 저해하는 측면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법을 만들에 있어서 절대로 정치적 이용이나 관변화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법을 만들면서 철저하게 반영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가 그런 방향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 말씀하셨지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더 이상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이북5도에 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9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10분씩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고, 맨 먼저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하나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실 좀더 공론화를 해서 나왔으면 좋았지 않느냐, 일반 국민들이 이런 정부조직의 개편이 타당한지 아닌지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단 법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는 상위직인 차관을 자꾸 늘려나가는 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4년도의 공무원 변동 상황을 보면 장·차관급 정무직이 11.3%나 늘어난 데 반해서 일하는 실무자급은 2.4%밖에 안 늘어난, 다시 얘기해서 상층부만 자꾸 늘어나는 조직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4개 부처를 복수차관제로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나름대로는 기준을 마련해서 1그룹, 2그룹에 속한 데서 4개 부처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선 지금 우리 정부조직에 부총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중이 그만큼 커서 부총리제를 운영한다면 부총리를 두고 있는 데를 단수차관으로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제도고요.

또 하나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위 책임장관제, 그래서 통일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일 안보와 사회 보건의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맡겨서 책임장관으로 기능을 부여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부처가 어떻게 해서 소위 복수차관제에서 제외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공무원해 봤지만 장관으로서는 복수차관제를 해서 차관이 분담하고 업무량과 통솔 범위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 외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획일적인 게 아니라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양 등 여

러 가치를 고려해서 하는 접근방법으로, 우리도 4개 부처를 선정했지만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보면 과거에 도의 업무량이 과중하다 그래서 1981년도에 부지사를 제1부지사, 제2부지사 두는 것을 신설했는데 이게 사실상 운영에 굉장히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층층이하를 뒤 가지고 아래에서 일하는 게 매우 어렵고 조정도 어려워져서 한 1년 실시하다가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관, 제2차관제로 해 가지고 아까 장관께서 설명하신 행정 분야와 또 다른 전문 분야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업무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부처의 업무 추진이 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효율성과 업무의 조정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아까 장관께서는 “우선 해 보고 앞으로 필요한 데는 확대해 나가든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 경험으로는 역시 과거에 도에 부지사가 차관급 밑에 1급이 있어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사관제로 있는 부지사가 곤란하다 그래서 우선 큰 5개 시·도만 1급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도에 차별을 두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실상 전부 1급 관리관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불원간 각 부처가 전부 복수차관제로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실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 위원 생각은 적어도 이런 복수차관제를 허용한다 그럴 때는 선진국에도 내각제를 실시하는 데는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정말 강대국과 같이 외무부 같은 데는 나라별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 제도, 그래서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수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걸 실시하면서 우선 4개 부처지만 나머지에 대한 것은 어떤 전체하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복수차관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아주 급한 게 아니라면 정말 이거야말로 공청을 해서 국민 공감대를 가지고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둘째, 여성가족부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가족에 대한 행

정적인 접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여성가족부라고 해서 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를 보강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 선택의 문제지만 그러나 지금 여성부에다가 가족부의, 그것도 극히 일부의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만 가지고 과연 가족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를 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든다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조정해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부처의 하부 조직 계장·과장·국장·차관·장관의 시스템을 팀장·본부장·차관·장관으로, 이렇게 5단계를 4단계로 하는데, 팀장제도가 지금 사실상 운영되기도 하고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과연 팀장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팀장 중에는 국장급도 있고 과장급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국민들에게 이 직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대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직도 횡적 개념보다는 종적 개념에 익숙해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 이렇게 팀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일하는 그룹을 전부 대등한 관계로 만들었을 때 조정·협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차관보를 임의규정으로 해서 부처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위직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업무의 다른 성격을 합쳐서 큰 부처로 만들어서 차관제를 복수차관제로 한다는 논리라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건설교통부가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론 지수에 미달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로 한 것은 아마 우리도 일본 것을 본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국토교통부’ 했을 때 이 명칭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보존에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발이라면 명칭도 ‘국토개발교통부’라고 하든지 이런 명칭에서부터 국민에게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간단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요점만 답변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우선 차관 증설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작은 정부 지향하라는 의미는, 저희들은 지금 물론 작은 정부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부총리기관을 단수차관으로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적 지위나 조정하는 역할 때문에 부총리 지위를 주지만 오히려 업무의 성격 면에서는 통일부나 그런 데서 복수차관 하는 것은 수요 면에서……

○이재창 위원 장관님, 그것은 책임장관 논리고 부총리제를 만들 때는 거기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총리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과학기술부도 해서 차관급 본부장도 두고 또 교육인적자원부도 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이재창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각이 지금 여기 나온 지표로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조직에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복수차관을 도입할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 기준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했던 것은 다섯 가지 기준을 다 놓고 그것에 의해서 순서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분석을 했고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어느 기준을 강조하시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객관적인 5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부지사하고 제2부지사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1부지사, 제2부지사 했던 것은 업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원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운영하는 CEO가—장이—잘못되어서 나온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는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장관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차원에서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의 기능관계를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잘라 주면 그런 혼선은 분명히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책임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복지부와 여성부와의 관계, 또 정부 내에서의 토론을 통해 여러 번을 논의했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왔습니다.

혹시 실무적으로 더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여기 지금 여성부의 기획관리실장이 나와 계시니까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조직을 민간조직과 공기업조직과 정부조직 3개로 나눠서 볼 때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기능면에서 보면 민간의 4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되고, 민간보다도 정부이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조직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가장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조직이라면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기업에 있으면서 팀제를 운영해 봤고 그 팀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팀제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장관이 책임을 지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조직권을 부여해 주고, 그 조직권의 운영 결과, 성과를 봐서 가장 나쁘다고 했을 때는 그 장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행정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임의규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장관이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져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규정했습니다.

건설교통부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복수차관이 필요하지만 건설교통부 중에서 철도청이 민영화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 시점에서는 좀 미루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서도 감안됐고, 기구 내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돼서 뒤로 밀려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의 명칭 문제는 다들 논의하는데, 물론 관계부처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건설이라는 것은 개발연대에서는 필요하지만 국토라는 전체적인 주어에서 국토이용계획법이나 국토종합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명칭을 좀 부합시켜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다음에 이명규 위원님…… 대단히 미안하지만 일문일답으로 해서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저는 10분도 쓸 생각이 없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이기 때문에 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부처에 차관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 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부 외통부 산자부를 만들 때, 성격이 상호한 부서들을 만들 때 차관을 하나 더 두겠다 이러면 전부 이해가 가는데, 이미 재정부 외통부 산자부 같은 게 지금 몇 년간 되어 있는데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왜 차관을 한 사람씩 더 두려고 하느냐,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11월 30일에, 여기 지금 차관님 안 계시는데 기상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7관서 차관급 승진에 대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 이유가 뭐냐 하면 ‘조직이 증설되고 그 밑에 하부 조직도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차관급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에 정반대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정책, 저는 도대체 가족정책이 뭐가 싶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성부에서 가져가려는 가족정책의 개념이 뭔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공청회 자료에 보니까 ‘현행 가족정책의 범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의 욕구가 ‘가족가치관·규범에 대한 인식 제고, 소득 욕구, 건강 욕구, 부양·양육의 욕구, 주거 욕구, 심리·사회적 욕구, 기타 가족 조성의 욕구’, 이렇게 욕구를 8개로 죽 갈라놓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의 한 가지만 보면 ‘가족가치관·규범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민법, 소득세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형법, 사회보장법 등). 제도 및 종합계획’ 이래 놓고, 관련 부처가 법무부, 재정부, 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알기 쉬운 ‘양육의 욕구’ 한번 봅시다. ‘아동 양육 서비스·프로그램’ 해서 ‘육아휴직제도, 이혼가족 자녀양육비 관련 정책,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독립생활 프로그램,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과 가족지원 정책’ 이래 놓고는, 관련 부처가 여성부, 행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오른쪽이 전부 다 관련 부처입니다. 이렇게 새카맣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가족정책의 개념을 여성부에서 가져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성부 내에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읽어 봤습니다. 여성부의 전문위원조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여 모부자복지법이 여성부로 이관되는 경우 모부자 가정의 빈곤문제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각 정책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는 것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모호한 가족정책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여성부가 가져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선 복수차관 설득력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고요.

사실 모든 나라에서 그만큼 채택한 제도라고 그러면 저는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희들 설명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잘 올리고 이해가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장관님, 됐습니다.

저는 됐고, 그다음 분 질의하시지요.

○위원장 이용희 유인태 위원님!

○유인태 위원 질의라기보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게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풍토 때문에, 하얏튼 공무원들이 간섭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선진사회로 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공장 하나를 지으려면 이백몇십 개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의 잘못된 풍토와 역사 때문에, 오히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잘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자꾸 작은 정부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군림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는 줄이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수는…… 주5일제로 가는데 아직도 경찰관도 부족하고 교도관 등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이 참 많은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자꾸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수는 늘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김덕룡 원내대표 대표연설을 들으면서 그동안 행자부에서는 왜 야당에게 설명을 제대로 못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정무직 숫자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자꾸 작은 정부 지향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하나하나 보면 가령 국무조정실에 차관급을 늘린 것은 그동안 야당도 그랬고 정치권이……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총리실이라는 게 바지저고리 총리실 비슷했고 청와대가 다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총리실이 헌법에 보장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차관급도 늘린 것이고요.

제가 정부에서 일하면서 주로 주장해서 한 것 중에는, 외국에 가면 적어도 그 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장이나 문화재청장은 최고의 지성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장관급보다 오히려 국립중앙박물관장이라고 그러면 더 대접을 받는 자리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1급이었던 말이지요. 이것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나 문화재청장도 차관급으로 격상을 시킨 것입니다. 이 정무직이 늘어난 하나하나의 이유를 보면 소방방재청 같은 것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신설한 것이고, 전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수차관제에 대해서 법안을 내기까지 행자부가 정치권과 의회에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라

고 느낍니다. 정부와 의회하고의 대화 채널이나 소통이 안 되는 데서 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정무장관을 뒤편에 두는 것 아니냐. 사실 야당 의원님들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는 지금 정무장관실이 신설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정무장관이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정무장관실을 신설한다고 그래도 의회에 줄 선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업무가 과중합니다.

복수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의회와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법안을 하나 내고 하는데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무장관실을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는 차관을 부처에 신설하는 게 비용 면에서도 훨씬 덜 든다는 판단에서 우선 도입하는, 일종의 정무직 차관으로서 좀더 의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하에서 일사불란한, 의회가 거의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하던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닌 만큼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설명이 좀더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정복 위원 유정복 위원입니다.

장관님께서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주무장관이신데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능률과 성과가 먼저 확보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책임이 확보되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복 위원 대단히 교과서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 운영은 현실적인 부분을 떠나서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오시기 전인 작년에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승격시키면서 ‘과학기술부가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부총리 승격의 주 요인이었고, 또 거기에 1급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할 때는 ‘관련된 업무를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번에 복수차관제의 주 논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이 많다는 부분이 아마 큰 요인일 겁니다.

지금 유인태 위원님께서도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조직 운영에 대해서

는 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부조직은, 또 공무원 수는 놔두면 자꾸 커지게 되어 있고, 그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보편적인 경향(trend)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세계사의 흐름이거든요.

영국 보수당에서 'I Believe'라는 주제하에 광고를 내서 지난해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못 봤습니다.

○유정복 위원 거기에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로 '국민들은 커야 하고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필요성을 갖고 얘기하면 응당 그 논리가 있습니다. 차관의 업무량이 많고,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을 '작은 정부로부터 출발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서 보면 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통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로 지난해에는 법체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을 하고 문화재청장을 차관급으로 승격을 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할 문제라든지 또 1급 본부장의 차관급 신설 등 정부조직의 상위직이 비대화되어 왔다는 측면과 더더욱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2개나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지금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과연 정부조직 운영이 진정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 또는 '작은 정부 큰 국민'을 지향하는 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장관님께서 행자부장관으로 부임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혁신을 아주 잘하시는 장관님, 소위 말하면 혁신코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언론에서 한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임하자마자 아주 개혁적인 여러 가지 업무혁신을 이루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신동아 3월호에 보니까 아주 업무 개선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대면결재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면 3분의 1로 시간을 줄인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 '공무원의 수보다는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주 상당히 훌륭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진정으로 혁신할 때 돈 들이고 조직을 늘려서 하는 혁신이 아니라 업무의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기하는 이런 형태로 혁신을 할 때 정말로 국민을 위한 혁신이 되지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고위직을 자꾸 늘려가고…… 참여정부 들어서 지난해 차관급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고위직을 자꾸 늘려 가는 것은 국민을 위한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자칫 잘못하다가 정부를 위한, 공무원을 위한 혁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명분과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직을 비대화시키고 또 상위직을 늘리고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때를 가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 민생이 부분적으로 파탄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국민의 고통이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도외시—무시—하고 정부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기구의 확대나 고위직의 신설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는 4개 부처에 대해서 일이 많다는 논리를…… 지방행정조직을 전부 관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에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인구 100만이 되는 수원·성남·부천 이런 도시도 있고 2만, 3만이 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확일적으로 부단체장을 1명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제도적 장치를 잘 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사람들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업무량을 해결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작용이나 문제를 나올 수 있다는 측면과 형평의 논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

각됩니다.

총괄적으로 이번 복수차관제 문제는 때도 맞지 않고, 또 장관님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특장으로 해 가지고 오셨는데 물론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정부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바꿔 주면 현재의 기구와 조직을 가지고 지금 현재하는 것에서 몇 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시스템을 바꿔 주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바꿔 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이나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것도 다 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현재 정부조직의 시스템 중에서 과도하게 1장관·1차관 체제하에서, 밑에 나와 있는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관은 완전히 보틀넥(bottleneck)입니다.

제가 산업자원부에서 차관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차관의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게 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게 하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는 면에서 일을 잘하게 그 시스템을 바꿔 주는 그런 차원의 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특히 정부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 온 데서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객만족, 즉 국민으로부터의 만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하고 또 정책을 많이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대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데 공무원이 하는 일의 수준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고객만족—국민이 만족하는—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바

뀌어야 되고, 그중에서도 조직체계가 합리적으로 양질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유정복 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을 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조직에서 상위직을 늘려 가면서 하는 부분이 과연 최선의 방책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혁신 주무장관으로서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국민들이 정부시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지 않느냐 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공격적인 입장에서—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유정복 위원**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 부분은 정부 측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 국민적 시각에서 보는 그런 혁신이 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의 가치를 측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에는 유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장관이 28명, 차관이 61명인데 2004년에는 장관이 36명, 차관이 8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3년도의 정무직 숫자하고 지금 숫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98년은 특별한 상황 이었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조직과 사회구조가 다운사이징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줄여야 하는 때이고, 지금은 양의 질을 따지는 시기가 아니냐. 그렇다면 원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좋아하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여론조사는 안 하고요. 각 부처의 직무를 분석하고, 1년 동안 했습니다.

○**유기준 위원** 공청회는 해 보셨어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유기준 위원** 공청회나 이런 여론조사들이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할 계획이 있으세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사실 지금까지 정부조직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조직을 만들 때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 왔거든요. 공청회는 지금까지 안 했고, 또 앞으로 공청회를 할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유기준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이용희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유기준 위원** 복수차관제가 원래 외교통상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로 도입이 확대하기로 됐다고 결정했는데, 여기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경우에 제1·제2 차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양차관 사이에 업무분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살펴보니깐 다른 부처는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경우에는 지방분권하고 정부혁신 양업무로 차관이 나뉘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지방분권을 할 것인지 어디가 정부혁신을 할 것인지 한계 선상에 있는 업무도 많다고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잘못된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도 아주 모호한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이것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전통적인 업무분장 방식인 행정자치부 내부의 업무하고 행정자치부 외부,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이나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복수차관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과연 행정행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하면 국민여론이 전혀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특히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설득하는 논리를 많이 개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래 위원** 정부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설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더 이상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장관님께 조금 여쭙어 보겠습니다.

98년도에 행정부처 통폐합을 하면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98년 이전의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최근에 와서 117명으로 늘었는데 그것이 93년 숫자하고 같습니다.

○**조성래 위원** 그러니까 93년도나 98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93년도에는 정무직이 117명이었고 98년도에는 89명이었습니다.

○**조성래 위원** 상당히 줄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조성래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의 기구 자체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작은 정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조성래 위원** 지금 사실은 작은 조직을 가지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의 국가 역량에 비교해서 정부 자체는 아직도 작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조성래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교역국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조성래 위원** 그리고 흔히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강소국을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강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국이나 대국이나 이것을 판

단하는 것은 우선 인구가 많나 적나 하는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고 다음에 얼마나 전문화되고 능력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다 국민총생산이라든지 경제적인 규모나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대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래 위원 그래서 몇 년 뒤에 2만 불 시대를 정책목표로 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도 뜻을 같이합니다.

○조성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판단할 때 시야를 국내로 좁혀서 우리 자체의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 역량을 훨씬 더 키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세기에든 물론 그랬고 21세기에든 그렇습니다 마는 정부 역량이라든지 행정적인 수요 이런 것들이 국민의 기대치도 높을 뿐더러 현실적인 수요도 높은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4개 부처만이 아니라 복수차관제 문제를 전반적인 정부의 문제로 생각하고 차관을 두 사람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세 사람도 좋고 네 사람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기대나 행정적인 수요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고, 장관님 생각도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래 위원 저는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 위원들도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조성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지금 4부의 차관을 1명씩 늘리겠다는 뜻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김충환 위원 국무조정실 차장이 차관급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현재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을 차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충환 위원 청소년위원회도 차관급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 3개 외청—기상청 통계청 해양경찰청—에서도 차관급으로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의원입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건교부 산하 신도시 관련 후속청도 차관급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법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면 4개 부서를 차관으로 하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는 다른 부처들도 차관을 해 달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희망하는 부처가 있을 것입니다.

○김충환 위원 많이 있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김충환 위원 추세를 보면 대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존경하는 조성래 위원님께서 3명, 4명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제가 거론한 것만 해도 20여 명의 차관이 새로 생겨야 되고 곱하기 2를 하면 40명이 될 수도 있어서, 차관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김충환 위원님, 이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차관을 늘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민생치안 부분을 포함해서 하위직을 대폭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늘릴 것입니다. 하위직을 늘리면 당연히 그것을 어우를 수 있는 상위직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사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차관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거의 15% 가까이 공무원 수를 줄였고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국가가 그런 식으로 기구를 줄여 왔고 일반 민간분야도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은행 같은 데 가 보면 숫자를 대폭 줄여 가지고 지휘부를 아주 작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정부의 상부를 너무 키우고 있는 듯한 추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볼 때 이와 같이 수십 명의 차관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꼭 차관이어야 되느냐, 차관보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결재를 못 하고 바쁘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현재 1급들이 차관보급에 해당되는 지위입니다. 명칭상 차관보가 있고 실장이 있고 그런 것인데, 동등한 지위의 5, 6명의 1급들이 있고 그 위에 있는 한 사람의 차관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5, 6명으로부터 오는 일이 장관으로 가기 전에 차관 한 사람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질이나 수준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업무를 아래쪽으로 대폭 위임해 가지고 결재도 좀 줄이고 국장선에서 다 결정하게 해서 정부의 국장급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차관보가 감독하고 차관이 제한적으로 결재하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1급이나 국장을 묶어서 본부장으로 해 주고 의사결정이 본부장선에서 다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해 주고 또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정책 결정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차관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해서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차관급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참여정부 이후에 집행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수십 개 생겼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많지 않습니다.

○**김충환 위원** 집행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몇 개쯤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

○**김충환 위원** 지금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닙니다. 정부혁신위

원회나 그런 것은 자문기관이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를 만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체크해보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등 장관급으로 해서 만든 것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개 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것은 성격이 사실상 자문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 소속으로 만든 것이나 대통령 소속으로 만든 정부혁신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자문위원회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김충환 위원** 정부가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고 또 거기다 집행기능까지 부여하는 등의 일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이것은 사실 위원회라는 이름이 같아서 그렇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와 똑같이 부처로서의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나머지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 하다못해 산업자원부까지도 청소년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묶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정부하의 중앙정부 집행 기능이 있는 위원회, 또 자문위원회의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아까 이명규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가족에 대한 일이 됩니까? 직원 몇 명이 그 가족 일을 담당하게 됩니까? 가족업무는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할 수 있나요?

○**여성부기획관리실장 김애량** 여성부 기획관리실장 김애량입니다.

현재 정부부처에서 가족업무라고 지칭해서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정심의관 밑에 인구가정정책과가 있고 거기에서 2명 정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면 그 2명이 하는 업무를 여성부로 가져오겠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여성부기획관리실장 김애량** 그 업무는 아까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기능을 각

부처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은 부처에서 분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의 해체현상이 일어나서 복지 시혜를 줘야 되는 경우에 그 복지 시혜를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모자라든가 부자라든가 한 부모 가정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는 정도의 일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 금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할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김충환 위원**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가정복지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부기획관리실장 김애량** 예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가정복지업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까지를 다 합쳐서 가정복지과를 설치했고 그 업무를 한 과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약간 분화되어서 여성하고 노인, 아동, 청소년이 각각 분리된 형태로 집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관련 국이나 과에서 모·부자 가정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여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면 여성부가 편부모 또는 해체 가정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연구하겠다는 뜻인가요?

○**여성부기획관리실장 김애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족 문제가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나 사회 문제의 근간이 된다고 드디어 사회에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복지부에서 사후적으로 파괴된 가정이 발생하면 그때 보호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여성부가 가족업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여성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부가 가족업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 현상에서 가족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처가 생겨야 하는데 복지부 일부 과의 2명이 하는 업무가 아닌 정말 포괄적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가족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가족부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에서 새로 부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면 가장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처가 어디냐,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성부

였습니다. 그런데 여성부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여성 문제하고 가족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학계나 이런 데에서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라는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교부를 국토교통부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름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이름만 바꿔 주는 겁니다. 지금 건설 기능보다는 국토 기능이 더 주가 되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는 이름으로 바꿔 주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김충환 위원** 다른 부서하고 바꿀 데가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제항 위원** 저도 법안소위원이라 각종 압력이 있어서 말을 안 했는데 유기준 위원님이 용기를 주셔서 가지고, 원래 듣고만 있어야 되는데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복수차관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장관님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작은 정부라는 개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제항 위원** 경기가 좀 어렵고 국가 기능이 줄었을 때는 축소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해야 할 때 할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산자부차관 지내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우제항 위원** 옛날에 동자부하고 상공부가 합쳤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우제항 위원** 합치고 나서 에너지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1급이 취급하면서 그저 가져오는 수준 정도밖에, 개발이나 그런 기능은 잘 못했습니다.

○**우제항 위원** 저도 옛날에 동자부의 에너지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기름을 언

제 살 것인가, 어떻게 비축할 것인가의 판단을 잘못하면 전 각료 월급의 몇십 배, 몇백 배 드는 겁니다. 이것 분명히 하셔야 돼요.

차관 네 분 늘리면 공무원 몇 명이 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16명 정도입니다.

○**우제항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제항 위원** 사실 8억이면 큰돈이지요. 그러면 장관이 줄잡아서 8억 정도 투자하면 몇 억 건져 내실래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는 몇 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우제항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이것은 낭비적 차원이 아니다, 내가 과거에 상공부차관으로 있었을 때 기구 축소하느라고 묶어 보니까 에너지 문제로 이렇게 골탕 먹은 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얘기해야지요.

외교부차관이 외국 몇 번 돌아다니면 사무실에 있는 것은 5%도 안 돼요. 외교부차관이 방만 지키고 있습니까? 돌아다녀야지요. 그러면 차관이 없으면 장관 혼자 모르잖아요. 외교부는 대사 지낸 사람이 낫습니다. 정무직인 장관이 와서 모르면 전문 관료인 차관이 틀어 앉아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할 때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할 때는 차관 하나로 됐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간섭이 덜 하잖아요. 장관이 정책 개발하려면……

마찬가지로 합친 부서 아닙니까? 차관, 총무처에 계셨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권오룡** 예.

○**우제항 위원** 처음에 오서 가지고 지방자치의 드센 내무행정이 움직여집니까? 그때 당시 억지로 장관을 없애고 차관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겨서 이제는 이게 아니다, 그때는 국가가 모든 것을 절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무조건 없애는 것으로 뭉쳤지만 이제는 일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장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관이 일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우제항 위원** 그러면 경험담을 잘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래도 여기 행자위원회는 납득이 됩니다. 국민을 설득시켜야지요.

차관님, 차관 하시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됩니

까?

○**행정자치부차관 권오룡** 제가 각종 일정을 소화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우제항 위원** 차관님도 법안소위 할 때도 그렇고 여기 나올 때 보면 여기 저기 전화받고 해서 아마 하루 일과 중에 업무하고, 물론 관련 있지요. 행자부차관은 행사차관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권오룡**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국·과장들 보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에 관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우제항 위원** 그러니까 장관이 한 번 결정되면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 분야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국장들은 자기 것 다 관심 끌려고 하기 마련인데 차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돈 몇 푼 절약하려고 하다가 더 큰 손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식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을 인식시켜야지요.

작은 정부 좋지요. 일 안 하기 위한 작은 정부가 아니고 일하기 위한 작은 정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봉사하겠다는 서비스 분야, 일하겠다는 분야는 늘려 주어야 되고 규제하는 부서 부분은 줄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지금 차관급 월급 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84명 정도 됩니다.

○**우제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자꾸 늘리지 말고 한시적 차관으로 되어 있는 것 얼마를 줄이겠다고 안을 내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차관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명 올리는 대신에 국민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 뭐, 뭐, 뭐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끝나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줄이겠습니다' 해야 국민도 납득시키는 것이고 여기 있는 위원도 납득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관님께서 정부에서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야당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도움을 청해야지요. 그래서 법안을 맡고 있는 입장인데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법안소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우제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흥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서병수 위원님, 마지막에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미 저희 소속 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복수차관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 안 되는 명분은 타이밍이 좋지 않고 타 부처에 확대될 우려가 있고 또 명분이 약하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풀이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야당 위원들 간에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법안이 소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논의가 될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행자부에 충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정부조직법이 크게 한 네다섯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차관제 늘리는 문제, 청소년위원회 신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나라당 쪽에서 복수차관제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께서 아까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여성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사 복수차관제에 양 위원님이 찬성하신다 해도 여성가족부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셔야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러한 예로 16대 국회 말기에 문화재청장을 차관급으로 승격시키고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장을 차관급으로 승격시키는 안이 있었는데 ‘소방방재청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는가’ 하는 것에서 전부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조직법 자체가 부결되어 버렸고 국회가 폐회되는 바람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문화재청장을 차관으로 승격하는 것이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법에서 상당히 시급한 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청소년위원회 같은 것은 현재 있는 법을 총리실로 전부 합해 가지고 만드는 법인데 만약에 정부조직법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가다 보면 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사 복수차관제에 찬성하더라도 다른 법 때문에 반대해서 가지고 부결될 텐데 행자부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통과시키겠다는가 하는 것을 빨리 선택해 가지고 과감하게 법안심사소위 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넣을 것은 넣어서 통과시켜야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회의까지 통과가 어렵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행자부가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 위원**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님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 장관님께서 행자부장관이 되신 이유가 과거에 산자부차관도 하셨고 KOTRA 사장도 하셨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공무원 조직사회의 내용도 잘 아시고 또 민간기업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정부조직을 혁신해서 생산성 있는 조직체로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제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적재적소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일하는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는 사람을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외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행정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규제라는 것은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규제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효율적인 규제라든가 업무 내용을 분석해서 사람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장관님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하자면, 1998년도에 정무직이 89개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현재 117명이고 개정되면 122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정부부처별 위원회가 총 몇 개 정도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342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 관리가 되고 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화·전문화 차원에서 복수차관제를 둔다라고 했

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조직법 개정관련 참고자료’라고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외국 사례가 있는가 해서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의 예를 들어 놓았습시다마는 아마 우리나라의 차관이 미국의 부장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부장관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장관직무대행 등 보좌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외에 업무분야별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장들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내각제국가에서도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부장관과 정무차관은 내각제의 특성상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며, 사무차관은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무직,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차관을 지금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외국의 사례하고도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제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에너지 관리담당 업무를 보신 분이 1급이기 때문에 에너지 업무가 과거보다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차관이나 차관보를 다 없애는 방법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다 같은 1급으로서 업무를 충당한다고 하면 힘이 없어서 밀려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도입 기준을 만드는데 조사 항목과 방법, 이런 것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자체적 또는 부처 내에서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최소한도 이러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외부기관에 업무분석이라든지 직무분석을 통해서 과연 업무량이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대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분석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복수차관제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전부 보면 자체 내에서 또는 그 부처에서 결론을 내서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또 문화관광부라든지 건설교통부

이런 것은 제외하고 4개 부처, 마치 힘 있는 부처만 복수차관제를 둔다고 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부처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려고 한다면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고 의원들이나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위원장대리 박기춘 답변 끝나고 이인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오늘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감은 역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위원님들과 저와의 대화에서 제가 너무 설득을 못 시켜 드리고 있다 하는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고 강한 정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참여정부에서 지향하는 바는 작은 정부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물론 작은 정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강한 정부여야 되고 일 잘하는 정부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아까 조성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차관이 들어감으로 인해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산출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과 국가에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효율을 따져 주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지금과 같은 차관 하나라는 명칭 때문에 구속되어서 일의 질과 내용을 도외시하는 것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조직 자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이 많으면 행정규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일했고 일한 만큼 평가를 받고, 평가를 받은 결과에 의해서 일한 만큼 대접하는 조직, 그것이 민간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한 사람이 들어가면 일한 만큼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배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는 효율적인, 조직 면에서 이제는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는 차관의 조직을 바꾸어 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를 드렸습시다마는 명칭이 다양합니다. 부장관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부를 대신해서 장관이 유고가 있을 때 대행해 주기 위해서 부장관을 하는 것이고 업무의 분담은 차관에게 똑같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상무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도 4명~5명의 차관이 있었고 그것은 업무 면에서는 최소한도, 지금은 경제산업성입니다마는 옛날에 통상산업성이 있을 때는 사무차관이 업무 라인을 하고 대외 기능을 통상차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 기능을 위해서 정무차관을 2명~3명을 둡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동등하게 잘라 놓았기 때문에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간에 차관이 업무의 양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다, 즉 수평적 관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만약에 차관보나 그런 것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차관보도 1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급부터 밑에까지 조직의 계급이 중시되지 않는, 계급에 의해서 보직이 주어지는 그런 조직 운영은 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급에 불문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에 앉는 그런 계급 타파가 단계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당연히 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급과 국장이 밑에 조직이 많습니다. 국장으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더 다기화되어 있는 것을 스펀 오브 컨트롤(span of control)이 도저히 불가능한 차관 한 사람으로 묶어 주는 것은 업무의 능률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저는 차관을 2년여 동안 하면서 이것은 차관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차관이라는 자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제가 어디 가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으로 와서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복수차관제를 즉 검토해 왔고 그것은 저의 생각과 너무도 같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면서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현재 어렵지만 어려운 것이 차관 하나 늘었기 때문에 국민한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차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만족시켜 주는, 그리고 그것이 연말에 가서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복수차관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 보는 그런 것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을 물론 외부기관에 의해서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부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만큼 더 잘 아는 기관이 없습니다. 외부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에 의해 보면 그 경우 대부분 공무원이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외부기관에서 공무원 조직을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그런 것은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부처 선정에 있어서 혹시 힘센 부처가 된 것이 아니냐, 부처이기주의가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석해 온 것이고 오히려 힘센 부처가 아니라 일의 양과 질과 앞으로의 전망과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차관의 업무 양을 봐서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의 힘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저는 한 달 전부터 복수차관제 입법에 대한 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외국의 실패한 예와 성공한 예를 좀 짧지만 봤습니다. 그 요약된 범위 내에서 제가 속기록에 기록도 남기고 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필요하다면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제목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이것에 역행하는 현 정권’ 이런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부 실패를 불러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은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 제약조건, 근시안적 규제, 시장경제와 같은 이윤동기의 부족, 관료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무거운 세금과 관료적인 경직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압박,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한 공공지출의 확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 때 지지 않는

태양의 나라라고 불렀던 영국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영국 정부는 국민을 구석 구석 돌보고자 복지 정책에 힘을 기울였고 이것은 정부 부채의 증가와 각종 규제와 점철,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을 불러왔습니다.

영국은 1976년 IMF 관리체제에 들어갔고, 대처는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작은 정부,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내세워서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럽 경제 순위의 하위권을 맴돌던 영국을 다시 G4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처럼 구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했던 1970년대 영국의 당시 경제자유지수는 33위로 30위였던 한국보다 못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개혁으로 인해 2005년에는 7위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30년이 지난 지금 2001년 26위, 2005년 45위로 하락한 단계입니다.

정부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정부 실패 이후 여러 국가들을 중심으로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영국 미국 뉴질랜드가 지금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양자에 대비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이 세계적 추세인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작으면서도 효율적이고 강한 정부라면 좋겠고 그러나 작은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자체도 강한 정부,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22개로 앞의 정부보다 9개가 더 늘어났으며 작년에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이 2만 946명이 증가, 장·차관급 관료 수는 98년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늘고 있어서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통계에 의하면 12.3%가 증가했습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책을 주도하여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점은 이미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제기되었습니

다. 위원회들이 부처 위에 군림하는 형태의 기구가 된 탓에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부처 간 기능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혁신위가 기능 조정을 주도해 오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부처 간에 중복된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정밀한 구조조정 없이 고급공무원을 중심으로 수만 늘리는 것은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많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말씀하시는데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고위직이 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대행 및 대외업무 수행을 위해 복수차관 간 서열을 규정해야 하며 업무부담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 내 정책 결정의 혼선 및 불협화음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개 부처입니다마는 이것을 해 놓으면 나머지 부처에서도 또 핑계를 대서 우리도 복수차관제를 해야 된다고 이론을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 4개 부처의 차관도 우리는 반대합니다마는 나머지 부처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선 복수차관제의 기능은 그 부처의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수준에서 조직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직의 결정 권한은 해당 장관한테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요 지금 저희들이 4개 부처를 복수차관으로 합니다마는, 외국의 예에서 보나 또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아까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몇 분이 2명으로 경직된 게 아니라 복수차관에 의해서, 몇분의 차관에 의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인기 위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틀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경제분야 질문을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자료 수치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경제 수치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나빠지고 있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도 4%대에서 급급하고 있고 청년실업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빠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지 않다, 지금 만약 경제성장률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국민소득이라든지 고용이 창출되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런 구도로 가는 경우에 우리가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증가와 증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대외 경제지표 앞에서 국민들에게 차관이라는 자리를 늘리는 데 대해서 저는 설득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어려울 때는 ‘인원이 적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같이 졸라 맵시다’라고 호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여성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 가족업무는 노인 아동 여성 등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독일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독일의 예를 든 그것을 포함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가족의 업무가 여성 따로, 아동 따로, 노인 따로, 청소년 따로, 이렇게 분산된 예는 사실 거의 없다, 그래서 가족업무라는 것은 여러 기능들이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어야지 분리, 분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성부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그것이 여성의 지위에 대한 하나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부를 만들어 놓았는데 기능이 조금 모자라니까 보육업무를 좀 떼 가고 이번에는 가족업무를 좀 떼 가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분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부에 보육업무가 이관된 것이 원래 있던 기능보다 잘 되었는가, 이에 대한 검증 연구도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옮겨가니까 더 잘 하더라, 객관적으로 더 잘 한다는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부의 업무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가족업무를 가져간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그동안에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승격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반대도 있었습니다마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복수차관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정부조직에 도입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우선 인정하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차관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청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하신다는 것 이해가 됩시다만, 여당 위원도 많다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덕 위원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비유가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세비가 800만 원씩이다, 신문마다 1억에 가까운 세비를 받으면서 국회의원들이 뭇하는 거냐’ 하는 질타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저는 제 역할을 다 못 한다고 늘 반성합니다만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을 보니까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걸 볼 적에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또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월에 의원친선외교 차원에서 당시 김진표 의원하고 브라질을 다녀왔는데, 저는 그전부터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공무로 갈 때 일등석 주는 것을 보고 ‘무슨 일등석을 주냐, 비즈니스면 되지’,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29시간 걸려 도착하니까 바로 아침인데 그날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고 왔는데, 어떤 분들은 의원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이코노미나 비즈니스 타고 가서 그다음부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그래도 일등석을 타고 갔었기 때문에 일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정부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만 있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만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은 조금을 들여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볼 적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정부의 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군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내용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역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여야가……

○**이인기 위원**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 절차를 한 번 거쳐 봅시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정부조직법은 공청회를 한 적이 없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정부조직법을 공청회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그걸 한다는 것은 모양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정부조직법은 한 예가 없고요……

○**위원장대리 박기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는 지금까지 해 온 관례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 모양을 갖추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이인기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복수차관제 도입은 제가 생각할 때 네 군데를 도입하게 되면 여차피 앞으로 다섯 군데 여섯 군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제도 도입의 실행이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이 아니라도 사실 제정과 같은 성격이라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탄력도 붙을 것이고,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아까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공청회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던 것을…… 확정된 것도 아닌 복수차관 4명 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소위원회에서 의논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매 건마다 다 공청회를 해야 되는 문제 제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

시고, 양형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일 위원** 송구스러운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행정학을 죽 가르쳤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염려가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제도라는 것은 제도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논리적 취지로 접근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장관님께서는 운용적 측면에서 일하는 정부로서의 서비스 질 제고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되면 타 부처로까지 복수차관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도입되면 타 부처에도 필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조성래 위원님께서 3, 4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것이 효율성과 생산성이 있다면 그걸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약간의 코멘트를 통해 가지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관료조직이, 정부조직이 개선 중심의 경직성을 타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조직의 경직성을 타파해 나가면서 조직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다른 부처의 복수차관제 도입, 장기적으로는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적 다수차관제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세계의 행정사에 또 각국의 정부조직사에 얼마든지 그와 같은 유례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취지, 이제까지의 경험적 토대 위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시대 미래적 차원에서 그리고 운용적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

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서병수 위원님!

○**서병수 위원**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님께서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라야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조직하에서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제대로 잘 안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있는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이상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공청회도 좋고, 또 이것을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나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도 어떤 대외적인 연구기관의 직무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라든가 청소년위원회 업무를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도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바로 법안소위에 넘겨 가지고 법안을 심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될 우려가 많은 그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회의에 계류시켜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직무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고흥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에서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복잡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서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따로 떼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 여기에서 정리를 해서 소위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게 생각이 들지 않고요, 또 지금까지 해 온 관례로 봤을 때도 이것을 여기에 계류시켜 가지고 선별적으로 어느 것은 보내고 안 보내고 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위원회에 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결되고 통과되고, 또는 거기에서 무슨 편

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합리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가결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소모적인 얘기,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대체토론이 결론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소위원회로 회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기춘** 이재창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재창 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반대한다 또는 찬성한다 이렇게 양분법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번 정부조직법은 종전에 우리가 정부조직법에서 부분적으로 어느 직급 하나 올리고 한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제 친정이나 다름없는 행자부의 안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려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얻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더 갖고, 국회에서 정말 신중히 다룬다고 하는 자세라고 할까 심의 방법을 강구하는 게 보다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숫자 4개의 문제가 아니고 여차피 이견 전 부처에 확산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 외교통상부 같은 데는 둘 아니라 셋으로 더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복수차관제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수가 둘이나 셋이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무차관하고 사무차관 이렇게만 한다면 둘로 고정되지만 업무를 분할 관장하기 위해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면 이견 복수차관제 도입 자체에 대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에서 이견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소위원회에 넘긴다 하더라도 소위원회가 다루기에는 굉장히 벅찬 안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달 말도 좋고, 만약에 시간에 쫓긴다면 3월에 한 번 더 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좀더 논의를 하고 공론화를 좀 시킨 후에 다루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의 제안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를 만든다는데 국회에서 굳이 그걸 단순하게 작은 정부

논리 하나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이인기 간사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서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간사분들끼리 좀더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오늘 소위원회에 넘겨서 빨리빨리 처리한다는 그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장관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답변 듣고, 그다음에 강창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선 아까 서병수 위원님께서 “운영을 잘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현재의 1 장관 1 차관 체제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약 요소입니다. 그 시스템 가지고는 보틀넥이 되기 때문에—병목 현상이 되기 때문에—정책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2년 동안 경험했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목 현상을 놔두면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차관을 통과시키지 않고 오는 안전을 장관이 다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인기 간사님하고 이재창 위원님께서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하자는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한 행자부와 행정자치위원회보다 더 전문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논의 안 되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부조직을 물어봐서 어떤 조직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인기 위원 이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국민들 앞에 처음으로 토론하는 모습이 비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시해서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한번 들어 보자는 이야기지요.

○위원장대리 박기춘 장관님 말씀 끝났으면 강창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창일 위원 우선 반대하는 이유가 재정 문제 입니까, 아니면 정무직 남발 때문에 반대하는 겁

니까? 그리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까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까 권오을 위원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어느 어느 부서’ 하지 말고 아예 ‘필요에 따라서 복수차관제 둘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수월했을 것을…… 그건 이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의 효율성을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작은 정부가 큰 정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있는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얘기가 길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권오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식으로 수정안 낼 수는 없습니까? ‘복수차관제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이렇게 해서 한 4, 5명 필요하다면 4, 5명 둘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두려면 한 사람을 두고, 또 차관 필요 없다면 안 둘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딱 부처를 정해 버리니까 무슨 힘 있는 부처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상한 논쟁까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 문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 좀 초빙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나갔습니다마는 아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는데,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라고 명칭을 붙이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센터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구인데 협의회도 관리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회를 꼭 뒤야 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현재 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부처에 다기화되어 있는 자원봉사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지금 연합회 비슷하게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법안이라고 이름 고쳐도 괜찮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원법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사실은 이게 기본법으로서 각 의무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법

과 실체법의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존재하는 각 기능들을 묶어 주면서 기본적인 기능, 의무를 이행시키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냐, 제가 지원법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창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깊은 뜻이 없으면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유정복 위원님!

○유정복 위원 장관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나라당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지적들이 정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니,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누차 설명을 드리고 강조를 해 드리는데 그게 설득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합니다.

○유정복 위원 이 문제를 갖고 또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쟁점이 되는데요, 조금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공청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행자부, 행정자치위원회보다 더 전문가들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유정복 위원 사실은 그래도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도 한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한나라당 위원 단 1명도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기타 전문가 그룹이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마 대체적으로 나온 동료 위원들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전문가 집단이라고,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집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전혀 이해를 못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는 유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가 집단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고……

○유정복 위원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이고요, 지금 전체회의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공청회를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공청회로 가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더 논의를 하고 저희가 설명이 안 됐으면 가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기왕이면 빨리 이 제도가 도입되어서 정부가 일을 잘 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고맙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이쪽에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유정복 위원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행자부출신이고 일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총무처하고 내무부가 통합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오늘날 생긴 부분이 아니고, 더군다나 정부 혁신을 한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정말 진정한 혁신이라면…… 참여정부 들어서 정무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고흥길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조를 전부 진단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과감하게 혁신을 하는 가운데 ‘아, 이것은 필요해서 하겠다’ 하면 그것은 백번 공감하고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줄이지 않고 다른 조정이 없이 늘려 가기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정부조직이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혹시 정략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던졌습니까마는 야당에서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정무직이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나 과거의 전문직 인사보다는 외부의 인원들이 많이 충원됐습니다. 즉 정치적인 인사들이 많이 등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일본이나 기타 나라에서 정무 차관제도의 하나의 시발점으로 보는 측면도, 사실상 그런 의구심도 버릴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정말 정부조직 혁신과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줄이고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설득하는 명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늘려 가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선뜻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 전례만 가지고, ‘전례가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영원히 정부조직과 관련해서 그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공청회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자신 있다면 ‘해 봅시다. 국민을 설득시키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형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말씀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찬성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쪽의 위원들은 찬성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은 공청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대체토론을 오늘 충분히 장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관례대로 소위원회에 넘기자는 거예요. 소위에 넘겨서 거기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찬반론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찬반론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에서 각 당을 대표해서 충분히 능력을 갖춘 분들이 법안심사소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을 충분히 토론하고 거기서 결론을 얻어 내 가지고 나중에 전체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하루종일—대체토론을 해 놓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시간에 그것조차 못 하게 한다면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자로서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소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서병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박기춘 지금 서병수 위원님만 계속 발언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진행을 위해 다른 분들이 말씀을 자제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들이 하실 말씀이 없거나 찬성에 대한 당위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이해해 주시기를 사회자로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이 법안이 백척간두에 선 국가를 구한다든지 국민들의 생존에 관련된 절박한 문제도 아닌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표결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 대 8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과거사법과 같은 그렇게 큰 쟁점이 있는 법률들도 상임위에서 상당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쳤습니다.

하물며 이 제도에 대해서 한두 분의 위원님들이 아니고 다수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또 실용성 측면에서 반대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어떤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강창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인기 위원 시간이 절박하여 꼭 오늘 해치워야 될 것입니까? 그동안에 복수차관제가 없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 사실은 정부의 기능 면에서 비능률적으로 잘못 운영되어 온 측면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어떤 경영이나 행정에 있어서도 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빨리 시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부분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잡하시고 바쁘시지만 기왕에 논의해 주셨고 오늘 토론도 많이 해 주셨으니까 빠르게 종결해 주시면 저희 정부가 그것을 받아서 빨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이영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가능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민주노동당은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공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

는 이 법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동안에 조직 진단을 어떻게 했길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진단에 대해 각 부처마다 진단했던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공개하고 공개한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이 얘기가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그동안 정부가 국가공무원 정원을 죽 늘려 나가는데, 보면 5급 이상의 고위직이 훨씬 더 증가 폭이 큼니다. 그리고 하위직의 증가 폭이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낮거든요. 정부가 너무 상위직 중심으로만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정부의 조직이 이리이러하게 진단되었으니까 정부가 향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4개 부처를 시험적으로 시행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관례상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죽 보면 일단 시범실시되면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것이지 시범실시되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을 보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예 지금까지 정부조직이 이렇게 진단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마련해 주셔야 거기에 따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급하게 추진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에서 종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위원** 사회를 보는데 사회자가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고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셔야지요. ‘이렇게 하겠고요’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원장대리 박기춘** ‘하겠고요’ 해서 제가 진행을 앞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유정복 위원님, 진행해 나가도록 협조하신 것 있어요? 왜 전체 위원이 반대합니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일단 더 많지 않습니까?

○**유정복 위원** 내가 언제 전체 위원이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대리 박기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정복 위원** 언제 전체 위원이 반대한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기춘**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유정복 위원** 말을 똑바로 해야지요, 속기록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의견들을 더 조정해 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느냐’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소위에 넘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속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기춘** 소위원회에 넘기지 않았잖아요.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못 넘겼잖아요.

○**유정복 위원** 세 번을 얘기했어요.

○**위원장대리 박기춘** 소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유정복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 주셔야지요.

○**위원장대리 박기춘** 노현송 위원님부터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노현송 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놓고 다 입장에 따라서 생각 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정책에 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 또는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각자 자기의 생각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야가 100%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반대하고, 또 정부여당은 찬성을 한다 그랬을 때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것을 못하는 것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그 정책을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운영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책임을 지고 운영할 자신이 있고 하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이니까 야당 위원님들은 의견을 개진해서 그 정책에 대한 것을 진단해 주시고, 진단해 주시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행에 따라서 지금 대체토론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또 합의가 안 되면 논의가 그만큼 길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 절차를 밟아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토론은 충분히 했으니까 소위에 넘겨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지금 노현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인기 위원 노현송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취지를 보면 정부여당만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데……

○노현송 위원 그렇게 안 했지요.

○이인기 위원 내 말을 들어 보세요. 야당인 한나라당도 일정 부분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회 본연의 임무는…… 정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입장을 표현하는 겁니다.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막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충분히 토론이 됐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위원님들 입장이 여기서 제시가 됐고 그러니까 대체토론을 해서 더 이상, 여기서 논의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소위에 넘겨서 거기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그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박기춘 말씀 잘 들었구요. 지금 정확한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유정복 위원님 아까 말씀에서 제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정확한 진행을 한다면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위원도 계셔서 결론이 안 나면 표결해 가지고 넘겨야 된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사님하고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유정복 위원님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는 이것을 다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현송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 간사님의 말씀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두 분 다 맞

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관례상 회부를 안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표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기 간사님과 잠깐 얘기한 것을 듣고…… 지금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는 또 다른 정부가 있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그 시간을 이용해 대화를 해서 결론을 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들이 교환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꼬투리 잡아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의사진행이 되지 않지요. 협조하는 쪽으로 저는 주장을 했고, 또 이인기 간사님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로 어느 정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표결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그 대화를 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현송 위원 소위로 넘겨서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요.

○강창일 위원 소위에 들어와서 깊게 논의하면 되지요. 필요하면 전문가도 부르고.

○위원장대리 박기춘 정기국회도 아니고 임시국회에서 효율적인 진행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이인기 위원 지금 표결, 표결하는 데 사실 12대 11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나라의 역사를 좌우하는 법도 아닌데 12대 11로 찬반 의견이 나오는 것을 무리하게 12의 의견을 따라서 결론짓자고 하면 의사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노현송 위원 지금 결론 내자는 것이 아니고 소위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인기 위원 넘기는 것 자체를 12대 11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합의해서 넘겼지요.

○양형일 위원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양형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형일 위원 이 위원님! 제 얘기도 들어 봐 주십시오.

지금 상당 시간을 거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전원이 대체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말씀 안 하려고 늘 자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얘기의 내용이 최소한 50% 이상은 다 중첩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많으셨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전원 더 논의하자고 그러고, 열린우리당 위원님들은 순리대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전원 반대, 한쪽은 전원 찬성으로 이것은 정략적으로 임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국민들의 눈에 결국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정쟁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오늘 다른 법안들은 다 이보다 더 짧은 시간을 동원해 가지고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만큼 심도 있게 오늘 많이 토론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 종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서 또 하고, 거기서 전문가들을 부르셔서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서 부족하다면 전체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 가자는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상당 시간 토론 후에 얘기하신다면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토론의 기회가 아예 봉쇄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하고 전체위원회에 와서 또 토론하고……

○이인기 위원 우리가 지금 다수 위원이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논쟁이 끝없는 논쟁이 아닙니까?

○양형일 위원 그러니까 그 다수 의견이 여야 위원들 공히 서로 간의 입장에 공감성이 있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장대리 박기춘 유정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정복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 위원님께서 정략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국민에게 물어보기를 했습니까? 그러시다면 공개해서 국민에게 한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하는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양형일 위원 위원님께서 제 얘기를 오해하셨

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위원들이 표결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소모적일 수밖에 없고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송 위원 이것을 소위로 넘기는 것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지요.

○위원장대리 박기춘 확정은 잠시 후에 위원장께서 도착하신다니까 그때 해도 되는 것이고, 우선 나머지 법안을 하고 나머지 법안들하고 같이 소위원회로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양형일 위원 지금까지 소위로 넘기는 것으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니까……

○노현송 위원 여기서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고 소위로 넘겨서 소위에서 또 논의하자는 것인데, 그 단계로 넘기자는 것인데 왜 결론을 못 낸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박기춘 반대하니까 못 하는 것이지요.

○강창일 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위원장대리 박기춘 지금 소위원회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위원님 열 분하고, 이영순 위원도 반대하는 것이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소위원회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영순 위원 소위원회로 급하게 넘기는 것보다는 좀더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인기 위원 지금 두 당 11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춘 지금 두 당 11명이 반대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때로는 두 당 14명이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동의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강창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거기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친일법이나 과거사기본법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지 말자고 하는 것은 논의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다음에 국민적 합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각

자가 국민적 합의의 도출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헌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깐 거기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잘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인데, 지금 소위원회로 넘기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봉쇄해서 거론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반대할 것이 아니고, 토론이 부족하다면 여기서 밤샘이라도 하면서 토론하자고 얘기하시든지 하세요.

○노현승 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 토론하면 되는데 왜 거기 넘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일단 여기서 토론하고 거기로 넘겨서 다시 토론하고 했지 않습니까?

○서병수 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프로세스를 밟아 나간다는 얘기인데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정부 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정부 측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만일 4개 부처에서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전 부처에 확산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민들과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됴도 불구하고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기를 일단 이것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시책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번 제도를 고치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다든가…… 또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들이 부처 내의 일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밖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보다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 업무 효율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고 또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서 국민들이나 또는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태까지 정부조직이 잘되어 왔다고 하면 왜 밖에서 정부조직의 관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대외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누차 반복해서 이야기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박기춘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한 정부 자체의 입장도 불분명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정부와 합동으로 직무분석 같은 것을 한 다음에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지금 서병수 위원 말씀대로라면 소신도 없는 것이고 실험적으로 해 보고 안 되면 돌리겠다 이런 식인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장관님께서 명확히 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선 다른 부처로의 확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심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복수차관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복수차관제를 해야 될 곳이 이 4개 부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역시 국회에 와서 논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없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는 지금과 같은 조직 형태 가지고는 효율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차관을 늘림으로 인해서 오는 효과가 더 크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은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의 조직에 관한 것을 항상 진단하고 평가하고 만들어 가는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정부 조직에 관한 노하우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민간기관이 할 수도 있겠지만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

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부 각 부처의 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 기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가 정부조직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는 국회 행자위가 지금까지 국민을 대표해서 심사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부가 내부 안을 만들고 그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행자위원회에서 심사해 주면 가장 잘된 평가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차원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도입하되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우선 4개 부처부터 먼저 실시하겠다는 뜻이지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우선 4개 부처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 그것을 방만하게 보거나 또는 되면 되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시각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정부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보고 또 어쨌든 이 자리에서 대체토론은 마쳤으니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서 전문가 그룹도 불러서 다시 한번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소위에 회부할 것을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서병수 위원** 그런데 아까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문제도 한시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임위에 계류시켜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공청회도 하자고 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시한에 테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여유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법안소위에 넘기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일단 정부가 저희를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니까 소위에 회부해서 더 논의하자는 말이에요. 빨리 소위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야당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단 소위까지는 갑시다.

○**서병수 위원**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가지고……

○**위원장 이용희** 일단 소위까지는 가고 거기서 또 논의하다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끝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몸으로 막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행정부 쪽에서 저녁도 못 먹고 또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이인기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 합의 내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희** 그렇지요.

○**이인기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빼면 한나라당 열 분하고 민주노동당 위원 합친 11명의 위원으로 12 대 11입니다. 12 대 11의 상태에서 열한 명의 위원이 빨리 진행하지 말고 좀더 검토해 보자고 하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운영이 아니지요.

○**강창일 위원** 묵살하지 않고 있어요. 이인기 위원님, 자꾸 당론인 것처럼 몰아가지 마세요. 지금 심정적으로 소위원회에 넘겨서 할 수 있다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왜 자꾸……

○**서병수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자면 여당 위원들께서도 저희 한나라당 위원들이 주장하는데 상당 부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방만한 정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이용희** 야당 위원님들 말씀에 절대 일리가 있지요. 또 행정부나 여당 위원 말씀도 다 절대적으로 일리가 있는데 순리대로 하더라도 법안소위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소위 해 보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소위까지는 갑시다.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의 지켜 가면서 해 왔지 않습니까? 야당 위원들이 몸으로 막

으면 못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 사안 자체가 몸으로 막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린 것이고……

○이인기 위원 위원장님, 이 법이 과거사법 같은 성격의 법도 아니고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또 23일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날 한 번 더 검토를 해 봅시다.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런 뜻도 좋고 저런 뜻도 다 좋은데 일단 소위까지는 갑시다.

○박기춘 위원 소위로 회부시킬 것을 정식으로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이인기 위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강창일 위원 논의가 깊게 될 수 있잖아요.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에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용희 장관 말씀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위원장님, 차관이 행사 부에서 죽 해 온 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희 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장관 권오룡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기 간사님이 과거사법이라든가 정치법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심사소위를, 순리적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인기 위원 잠깐만요. 국회 운영을 국회의원이 하지 차관이 순리고 비순리고 말할 자격이 없지 않아요?

○행정자치부장관 권오룡 오해의 소지가 있으셨다면 제가 순리적이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내부의 운영이나 조직체계를 바꾸는 것 가지고 소위를 안 거친다는 것은, 정부부처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셨던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듣거나 새로운 입장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하루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절차가 끝나면 전체회의를 또 한 번 하실 수 있으니까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마는 꼭 심사소위는 해 주실 것을 제

삼재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제넘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다른 복선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오늘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절차 문제로 이해해 주시고, 내일 심사소위에 간다고 해서 정부안이 통과됐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병수 위원 차관님,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만일에 정부조직을 혁신하려고 한다면 일의 분량을 줄이고 주제를 줄이고 업무량을 줄이고 그래도 꼭 이리이러한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혁신의 초입 단계에 자리부터 먼저 만든다는 것을 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권오룡 위원님, 몇 개 부처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운영체계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수단을 강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나 또 규제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문제 요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아무리 잘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보틀넥이 되어 버리면 효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행해서 가 줘야 되고 그래야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는 차원에서 접근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현승 위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합시다. 그 만큼 했으면 회부해도 되잖아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서병수 위원 장관님께서서는 차관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틀넥이 생겨서 업무하는 데 또는 혁신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차관을 한 사람 더 둬서 인해서 두 개의 보틀넥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병수 위원 차라리 보틀넥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러면 차라리 없애고 그 밑에 바로 있다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규정상 모든 업무는 차관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한두 분이 그런다고 해서 의사 진행을 못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까지는 가자고요. 야당 위원님들 소위까지는 가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양해들 좀 하세요. 소위까지 안 간다는 것을 여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정복 위원** 자칫 잘못하면 마치 한나라당이 이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될 만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입니다. 사실 소위에 가서 심의하는 것도 순리라는 표현이 됐지만 국회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곳이고 그런 것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곳이지 소위에 당연히 가고 공청회 하면 안 되는 것이 순리고 공청회 하면 역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이냐를 찾아가는 것이 국회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소위에 가든 공청회나 토론을 하든 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다만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은 의견 개선하면 되고 정부여당의 책임하에 가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니깐 그러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위에 가든 토론을 하든 발언을 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어떤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의 자세하에서 소위에 가지 않는다면 뭣하러 이 늦은 시간까지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정부 측에서도 우리가 결코 정략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또 비판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정략적이라고 이해한다면 야당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소수 여당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 위원들이나 이영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정략적인 접근에 의해서라는 시각에서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명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희**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규 위원**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려고 했

습니다마는 이러나저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에 법안소위에 넘긴다 치더라도 내일 법안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결론 낼 수 있나? 저는 못 낸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뭐 필요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소한도 법안소위에 임하는 저희 한나라당 위원들은 같은 행자자위 소속 위원들이라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납득이 안 된다면 내일 절대로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어차피 유보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 자신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내일 만약에 법안소위에 넘어온다면 내일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일 당장 결론 내리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일 법안소위에서 안 된다는 얘기는 2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23일 전체회의 때 다시 논의해 가지고 그때 소위로 넘겨주셔도 되지 않겠나, 조금의 시간적인 말미는 주셔야지 내일 법안소위 밀어붙이고 내일 법안소위 가서 오늘 중에 결정하자고 밀어붙이면, 이런 문제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파국을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법안심사소위원이라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일 열어 봐야 결론이 안 날 것이다, 그렇다면 23일 전체회의로 미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송 위원** 발언하실 분들 전부 다 발언하셨잖아요.

○**이명규 위원** 내일 결론 못 냅니다.

○**노현송 위원** 내일 결론을 내든 못 내든 여기에서 대체토론을 마쳐서 종결하고 소위로 넘기는 것이 관례잖아요.

○**이명규 위원** 제 얘기는 만약 소위에 넘겨 갖고 소위에서 결론이 나면 다행인데 내일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면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넘기나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노현송 위원** 내일 결론이 나든 안 나든 일단 여기서는 대체토론이 끝났으니까 종결하고 소위에 넘겨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든지 어찌든지 과정을 거치면 되잖아요.

○**이명규 위원** 어차피 노현송 위원님도 소위 들어오시겠지만 소위에 가더라도 같은 한나라당 위원들이 컨센서스의 합의점을 어느 정도 찾아서 가야지 현 상태로 가면 오늘 이야기의 재판입니

다. 그러면 내일 소위 열어 봐야 지금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 테이프 틀듯이 반복하고 아무런 낙이 없어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적 말미를 두고 하자, 약간 천천히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한 달 두 달 두자는 것이 아니고 내일모레 전체회의 하니까 내일모레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넘기는 것을 결정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내일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병수 위원** 노현송 위원님, 법안소위에 넘겨서 심의한다는 것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방향과 큰 물줄기가 잡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목조목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야지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소위에 넘긴들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창일 위원** 이틀 사이에 우리가 머리가 돌 것도 아니고 이틀 사이에 지구가 망할 것도 아니고 이틀 사이에 뭐가 변화가 있겠어요. 23일에 한다 해도 똑같은 얘기가 오가지 않겠어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명규 위원** 어차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강창일 위원** 어렵더라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하고, 이 회의에서는 비생산적인 토론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명규 위원** 이 상태에서 내일 열어 봐야 똑같은 얘기만 나오니까……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토론하세요. 밤새 해 보자고요. 토론할 것 다 하시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일단 의안이 상정되었으면 소정의 절차는 밟아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서병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간사 두 분이 협의하는 과정도 거쳐서 다듬어 가지고 법안소위에 넘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기춘 위원** 간사 협의에서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의논해서 상정시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대체토론을 길게 전체 위원들이 몇 번씩 돌아가면서 아주 중량감 있게 토론을 한 것인데 이 이상 갈 데는 소위원회밖에 없어요. 팽팽할 때 소위원회에 가야지 일방적으로 합의가 되면 소위원회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로 법사에 넘

기든지 본회의로 넘기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수로 가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았으니까 합리적으로 가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가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결론을 위원장님도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 소위원회에 넘기고 거기서 심도 있게 토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규 위원** 이틀 정도만 숨고르기 들어잡시다. 뭘 그렇게 밀어붙입니까?

○**노현송 위원** 정 그게 필요하다면 법안소위에서 해도 되잖아요.

○**이명규 위원** 또 다르지요. 법안소위는 세 사람이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돼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심의하시는 대상의 규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법 조항들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에서 하기에 과다하다고 보시지 말고 오늘 논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소위에 안 넘어가면 이번 회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기에 통과 안 시킨다는 전제라면 오늘 안 올리는 것이지만 심의해 주신다는 전제라면 넘겨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저희들이 작년 6월 1일부터 17대 국회 행자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소위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문제로 쟁점이 된 것은 유일하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열한 명의 위원이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자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제도가 없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 온 것은 아니고요. 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신적으로 이해되어야 되고 합의되어야 되고 또 당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의 의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상임위원회에 더 계류시켜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자, 시간을 가지자는 제의인데 이것을 안 받아들여 주고 열한 명의 의견을 무시하고 열두 명의 의견이 다수로 앞서니까 그 위원들이 진행하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자위원

회를 굳이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야당에서 23일, 내일 모레까지 유보해 가지고 그날 가서 처리해 준다고 하면야 해야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은연중에 이번 회기에는 안 된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깔고 있으니까 곤란한 것이지.

○**서병수 위원** 저희들 입장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두자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항들이 있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의논해 가지고 만일에 납득이 된다면 통과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일단 소위까지는 갑시다. 내일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모레 전체 회의에 회부도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인기 위원** 소위원회에 영원히 회부하지 말고 여기에 장기 계속사건으로 두자는 의견도 아니고요,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는 것인데 그 의견마저 안 받아들여 주면 회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희** 검토가 아니라 당에 대한 입장 때문에 이틀간을 유보해 달라면 모르지만 검토야 지금 할 대로 다 한 것이고 더 나올 것도 없잖아요. 토론할 것 다 하셨고.

○**이인기 위원** 위원장님도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좀더 생각해 보자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 말씀대로 이 법안 내용 자구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현승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에 넘겨서 또 논의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어쨌든 일단 여기에서 대체토론으로 한 번씩 다 발언해서 의견 개진은 끝났고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법안소위 아닙니까? 법안소위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또 논의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요?

○**이명규 위원** 금방 당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그 말에 저희들이 그 얘기는 끝까지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까 서병수 위원님 얘기처럼 저희들이 완전 100%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정부조직법을 대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당의 지도부 내에서도 약간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 자체도…… 사실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려면 소위원들끼리 이야기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조직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은 전원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인기 간사가 당 지도부와 의견 교류도 해 보고 이렇게 하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자꾸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모레 하자는 것은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자꾸 비슷한 얘기만 하는데 지금까지 행자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보세요. 법안심사소위에서 훨씬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전체회의 할 때는 대개 반복이 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원리원칙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해서 생산성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각 당의 심사소위원들이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반영하고 숫자도 적어서 아주 깊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순리지요.

○**이명규 위원**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런데 자꾸…… 소수도 다수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세요. 잘못하면 소수의 횡포가 된다고. 의견이 이렇게 맞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현승 위원** 정말 이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는데 의견이 서로 팽팽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명규 위원** 오늘 당장 넘기자, 넘기지 말자 하는 것을 이틀만 유보시켜 달라는 절충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강창일 위원** 지금 왜 이틀 이야기가 나오는고 하니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틀 연기 한다는 것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하게 되면 이쪽은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하면서 연기하든지 하자고요.

○**이명규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강창일 위원님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일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강창일 위원** 의견만 맞으면 통과시키겠는데 한

나라당에서 그렇게 몸으로 막겠다고 하면 통과 안 됩니다. 만일에 그렇게 당론이 결정되면 몸으로 막으세요. 그러면 통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의는 계속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는 안 된다는 전제를 해 버리면 저희도 입장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의 하자는 것은 봉쇄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노현승 위원** 과정은 두자는 것이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논의하면서 입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길은 열어 놔야지 이것을 완전히 미루어 놓으면 막히는 것 아니에요?

○**이명규 위원** 입장을 바꾸는 것도 법안소위에서 바꾸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법안소위로 가면…… 법안소위는 결론을 내리는 자리이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는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드린 것은 우리 당에서도 어느 특정 부서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지도부의 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틀간 시간을 달라는 것이지 금방 얘기대로 ‘내일 모레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넘기든 넘기지 말든 결정하자는 얘기는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거꾸로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것 아닙니까?

○**강창일 위원** 그래서 대답을 했잖아요.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놓은 것은 절충안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틀 정도만 말미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4명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입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일 하루 만에…… 오늘 처음 상정해 가지고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하루만 심사해 가지고 그 다음날 모레 전체회의에서 ‘땡땡땡’ 두드리고…… 제가 보기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는 점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차관제 해서 차관 4명 두자는 것을 몰라서 심사 또 하자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과연 우리 실정에 타당한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같이 다 연구해 보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저희 당 내의 지도부 의견도 어떤 식으로든지 통일되는 것이 저희들도 힘을 받고 법안소위에 나간 사람들 마음도 가볍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정복 위원** 잠깐만,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중에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이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 번도 어떤 얘기를 한 바 없습니다. 제가 1정조위원장인데 한 번도 보고한 바도 없고 지침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 위원님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당의 정략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시지 말아 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나라당의 행자위원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또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괜히 궁색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모레로 이틀 유보하자고 하면 이번 회기에 통과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사실 아닙니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해요. 이틀 유보해서 될 것인 양 해 가지고 마치 당장을 모면하기 위한 궁색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제대로 판단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행이나 관례를 말씀하신 부분들은 물론 이런 논의가 없는 것은 다 관행대로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부분이라고 이쪽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지적하니까 정말 그런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이번 회기에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우리 당이 아니라 제 주장이나 오늘 죽 말씀하신 한나라당 위원들 얘기의 취지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현승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소위로 넘겨서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치자는데 왜 그 자체를 반대하느냐고요.

○**양형일 위원** 유정복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럽다면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당 차원에서 심의를 지연시킨다든지 또는 통과시키기 어렵다든지 그런 논의가 전혀 없으셨다니까 그 점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복 위원** 그것은 긍정·부정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양형일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유정복 위원**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형일 위원** 왜냐하면 한나라당 위원님 전체가 대체토론을 충분히, 다른 안건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전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위원님들 전원이 소위로 넘기는 것을 반대하실 때 저는 이것이 정략적인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졌었습니다.

○**유정복 위원** 그것은……

○**양형일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이 법안의 성격을 보십시오. 과거사법하고도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국가보안법하고도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사립학교법하고도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정부조직의 운영과 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 여당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잘 해 봐라. 그대신 잘못되면 당신들 분명하게 책임지시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야당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여야의 조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이 몇 시간째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른 안건은 다 소위로 가고 그래서…… 소위에서 더 진지하게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한나라당 위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면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여기에서 통과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반복하셨는데도 소위로 가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것은 현 정부가 정부의 혁신을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하고 있는 그 변화 속의 한 부분적 변화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믿고 나중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서 소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절차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법은 2005년 2월 3일에 정부가 제출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지 저는 그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까지 차관 혼자서, 물론 힘들게 일을 해 오시기는 했지만 정부가 앞으로 이 방대한 조직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한 의도라면 좀더 깊이 있게 숙고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 왜 이 부분을 이번 회기 내에 급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비쳐지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좀더 논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최규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계속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체토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적 성격의 발언이 오고가고 있는데 이제 위원장님이 뭔가 결단을 내리셔서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 처리하는 뜻은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고 계실 것이 아니라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매듭을 지으려면 표결하라는 얘기지, 뭐 가지고 어떻게 매듭을 지으라는 얘기에요?

○**최규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아까 대체토론을 끝까지 들어 보자고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대체토론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매듭을 지어 주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고요? 매듭을 지으려면 표결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심재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희** 예, 말씀하세요.

○**심재덕 위원**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행자위의 분위기를 잘 감안하셔서 소수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시고 한 번도 큰 소리 안 나고 지금까지 잘 했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행자위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의 그간 탁월하신 지도와 의사진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일 모레 또 한다고 했을 때……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로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계류시켜 놓고 하자는 것이고 여당 측에서는 이영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비록 법안이 2월 3일에 제출되었지만 그간 계속해서 고민

고민 하다가 결과를 내놓고 국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내일 모레 가서 뭐가 보일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왜 무엇하러 이 자리에 와 있나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간 잘해 왔듯이 대화를 통해서 하되 만약 팽팽해서 안 될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두 간사님들을 따로 불러서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인기 위원 제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실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이틀 정도, 새로운 제도의 중대한 도입이니까 이틀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내일 어차피 소위가 열리니까 적절한 시간을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한 번 더 열 것을 제안드립니다.

○노현송 위원 소위를 하는데 어떻게 또 상임위를 해요?

○이인기 위원 한 시간 정도 하면 되지요.

○노현송 위원 내일 상임위에서 대체토론하면 이 이상의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인기 위원 나는 제외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지요.

○최규식 위원 소위에 앞서서 전체회의를 한 번 열자는 말씀입니까?

○이인기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회는 오전에 다른 법률을 하고 예를 들면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 열고 소위원회는 3시에 해도 되는 것이지요. 이틀을 달라고 했는데 이틀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노현송 위원 내일 10시부터 소위를 해도 처리할 법안이 얼마나 많은데 오후 2시에 회의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박기춘 위원 내일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른 일정들을 잡았지요.

○위원장 이용희 내일 아마 상임위는 성원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명규 위원 장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이명규 위원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사실 이 정부조직

법 개정 내용에 복수차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선 조직의 유연성 문제, 그것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실·국·과라는 명칭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도 바뀌 줘야 되고 청소년위원회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복수차관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만 같이 종합적으로 바꿔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월 정부조직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부조직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정부조직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중에 복수차관제 도입 문제만큼은 제외하고 내일 소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이 위원님, 지금 사실 복수차관제는 아마 소위원회 하시면서 논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간에 꼭 있어야 되고, 또 우리로서도 반드시 이것은 해결되어야 될 과제거든요.

○이명규 위원 보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데……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러면 사실 한나라당에서 다음 달에 복수차관제를 해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는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인기 위원 아니, 왜 그렇게 견고하게 딱딱하게만 대응합니까?

○노현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소위원회에 회부해 놓고 내일 또 얘기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용희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소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어떤 경우에도 강행 처리는 하지 않는다……

○이인기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수차관제 문제는 법안심사소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

○위원장 이용희 아니, 그게 복수차관 문제를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강행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인기 위원 그러면 '복수차관제를 포함한 모

든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했다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아니, 보세요.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까지 제 말은 법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꼭 약속 지켰잖아요.

그러면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그 대신 오늘 저녁 중에도 행자부에서는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은 소위원회로 회부한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0. 遊船및渡船事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0시30분)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유선 및도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선및도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사망 또는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양수인 등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과 승무원의 음주행위 단속 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오 장관,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나머지 주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희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기춘 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이 법안은 보다 더 심

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김덕규·이상득·임채정·정성호·박재완·유승민·김재원·이해봉·이시중·서병수·박세환·엄호성·송영길·김태년 의원 발의)

22.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한길·송영길·임채정·이명규·박재완·김재원·유승민·이상득·이해봉·이시중 의원 발의)

(20시34분)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춘 위원 위원장님, 본건도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법안은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장향숙·김춘진·유선호·정성호·조경태·김희정·조배숙·김현미·이시중·황우여·배일도·이기우·김희선·김원웅·김덕규·이상락·정병국·문석호·박재완·염동연·신중식·장복심·이해봉·이재오·최재성·안민석·김부겸·강창일·이윤성·임종석·엄호성·이원영·이상경·김태년 의원 발의)

24.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백원우·이원영·이용희·임종석·지병문·유기홍·구논희·장향숙·박기춘·우제항 의원 발의)

25.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김맹곤 의원 대표발의)(김맹곤·오시덕·정병국·서병수·노영민·안민석·오제세·박재완·정성

호 · 허태열 · 정문헌 · 박상돈 · 박순자 · 이호웅 · 조경태 · 김원웅 · 주승용 · 제종길 · 장경수 · 한병도 의원 발의)

26.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민병두 · 이인영 · 박영선 · 선병렬 · 이광철 · 김재윤 · 김태홍 · 노용래 · 이은영 · 안민석 · 우상호 · 정청래 · 이미경 · 김재홍 · 윤원호 의원 발의)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내지 26항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형일 위원** 저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아니니까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하세요.

○**양형일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장항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듣지 못하는 자를 제한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듣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 듣지 못하는 자라 하더라도 보완해 주는 장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일반인처럼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기본 정신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극복하고 일반인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법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법안심사소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법안 역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건의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는데 법안심사소위원들께서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들 법안과 기존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잘 심사하셔서 시급을 요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오늘 많은 법안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산회)

.....
【제안설명서】

유도및도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2004. 11.

제안자: 정 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도및도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사망 또는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양수인 등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과 승무원의 음주행위 단속기준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허(신고)를 반납하고 새로 면허(신고)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위승계 제도를 마련하며,

○승무원의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기준 마련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

록 하며, 유선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예방하기 위해 휴업, 폐업 또는 운항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도서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도선사업자의 영업위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교통에 불편을 주게되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5. 2. 21.

제안자 : 이명규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경비업법 제2조에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고 자라는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각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률에서 경비지도사의 용어 정의만 하고 시행령에서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소관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사항이므로 경비지도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9월 국회 법제실의 행정입법 법률전환 검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5. 2. 21.

제안자 : 정성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법 제4조에서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한 의무 제공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금전으로서 국가 등이 제공하는 사무의 성질이 자유로운 선택의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행정입법에 의한 규정이 가능하나 이용이 강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징수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 허가와 관련하여 공공역무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 수수료의 징수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제27조의2(수수료)에 “이 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동법의 시행령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4. 11. 19.

제안자 : 장항숙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2종 운전면허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자동차 운전이 있어 1종, 2종 면허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선진외국은 보조장치를 부착하면 청각장애인에게 종별과 무관하게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실제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20%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이 있다고 하여도 농업이나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어 월평균 67만원 수준의 소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높은 실업률과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노점이나 운수사업 등 새로운 직종에 진출하려는 청각장애인들의 노력이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생계유지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어 개정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4. 11. 22.

제안자 : 최재성 의원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도로공사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보행자의 안전보호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출퇴근시간 및 등하교시간 등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에 진행되는 공사는 심각한 교통정체와 보행자의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도로공사 시간을 도로사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 개정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공사기간 중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시행자가 공사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이번 회기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5. 2. 18.

제안자 : 김맹균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맹균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2004년 11월 25일 본 의원의 19인이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동차를 주행하는 경우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자동차의 등화를 하는 것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주의력 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간 점등은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자기 차의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알려 주고 터널 등 어두운 곳에서의 적응시간이 단축되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며 특히 2차선 도로에서 정면충돌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주간 점등이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에서도 의무화 채택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주간 전조등 켜기 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적극 권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자동차의 등화를 하도록 하여(안 제23조)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이 법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5. 2. 18.

제안자 : 민병두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님들께 도로교통법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중개정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하거나 차에 타고 내릴 때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신고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이에

따른 미신고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유명무실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제도를 의무화하고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48조의4제1항).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연 1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48조의5제3항).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리 미래시대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부디 본 법률의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형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出席委員(24人)

강창일	권오을	고홍길	김기춘
김충환	노현송	박기춘	서병수
서재관	심재덕	양형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인태	유정복
이명규	이영순	이용희	이인기
이재창	조성래	최규식	홍미영

○委員아닌議員出席(1人)

이상배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김종현

○政府側參席者

행정자치부	
장	오영교
차관	권오룡
차관보	문원경
기획관리실장	이상호
행정개혁본부장	최양식
경찰청	
청장	허준영

소방방재청

청장 권욱

여성부

기획관리실장 김애량

【報告事項】

○委員辭任및補任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곽성문	이명규	한나라당

(1월25일)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박찬숙	고홍길	한나라당

(2월1일)

○議案回附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1월18일 김양수·송영길·김병호·이혜훈·김용갑·김희정·안홍준·박형준·이상배·엄호성·최경환·신국환·이성권·김애실·권경석·박계동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개인의 화상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1월19일 김충환·김재원·유기준·안택수·서병수·이인기·이윤성·공성진·김맹곤·김재홍·임인배·박재완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24일 회부됨

개인정보보호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월1일 정성호·강창일·이은영·이원영·최용규·원혜영·김희선·김선미·최재천·양승조·우윤근 의원 발의)

2월2일 회부됨

公務員年金法 一部改正法律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2월2일 양형일·원혜영·박재완·박기춘·염동연·김동철·김태홍·우제항·김희선·우윤근·유선호·강기정·노현송·노영민·김재홍·이상경·지병문·김성곤·주승용·오제세·우상호·강혜숙·유인태 의원 발의)

2월3일 회부됨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

(2월3일 정부 제출)

2월4일 회부됨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1월31일 우윤근·강기정·강창일·권선택·김기석·김부겸·김선미·김성곤·김양수·김영선·김영춘·김재경·김재홍·김정훈·김태년·김학송·김혁규·김홍일·김효석·남경필·노영민·노웅래·문학진·민병두·박찬석·배기선·변재일·송영길·신기남·신학용·안민석·양승조·염동연·우상호·우제항·원혜영·유기홍·유시민·윤호중·이강래·이광재·이광철·이근식·이병석·이상경·이상민·이승희·이시중·이원영·이은영·이재오·이종걸·이혜훈·이호웅·임종석·장복심·정봉주·정성호·조경태·주승용·진수희·최규성·최용규·최재성·최재천·한광원·한화갑 의원 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2월2일 이은영·강혜숙·김명자·김현미·문학진·민병두·박영선·서혜석·선병렬·양승조·양형일·우윤근·우원식·유기홍·유재건·원혜영·이원영·장영달·주승용·천정배·최성·최용규·최재성·최재천·최철국·한명숙·홍창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7일 회부됨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구결의안

(2월15일 심재덕·권선택·권오을·김명주·김성조·김영춘·김우남·김재홍·김태년·노현송·박기춘·박순자·박혁규·서재관·신국환·안병엽·안상수·양형일·엄호성·허태열·우제창·이계진·이명규·이상득·이시중·이인기·이재오·이혜훈·최재성·최재천·한광원 의원 발의)

2월16일 회부됨

○請願回附

**과거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에 관한 청원**

(2005년1월31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동신아파트 101-1603 정연길 외 433인으로부터 이군현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2월2일 회부됨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재승으로부터 이원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18일 회부됨

○關聯議案回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월28일 정부 제출)

2월1일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
정도시건설 특별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2월5일 정세균·원혜영 의원 외 149인 발의)

靑少年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

(2월3일 정부 제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월7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2월7일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2월16일 김영주·박영선·이경제·단병호·이덕모·우원식·장복심·김현미·공성진·조정식 의원 발의)

2월18일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要請書提出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추천
의뢰**

(1월28일 정부 제출)

2월25일 회부됨